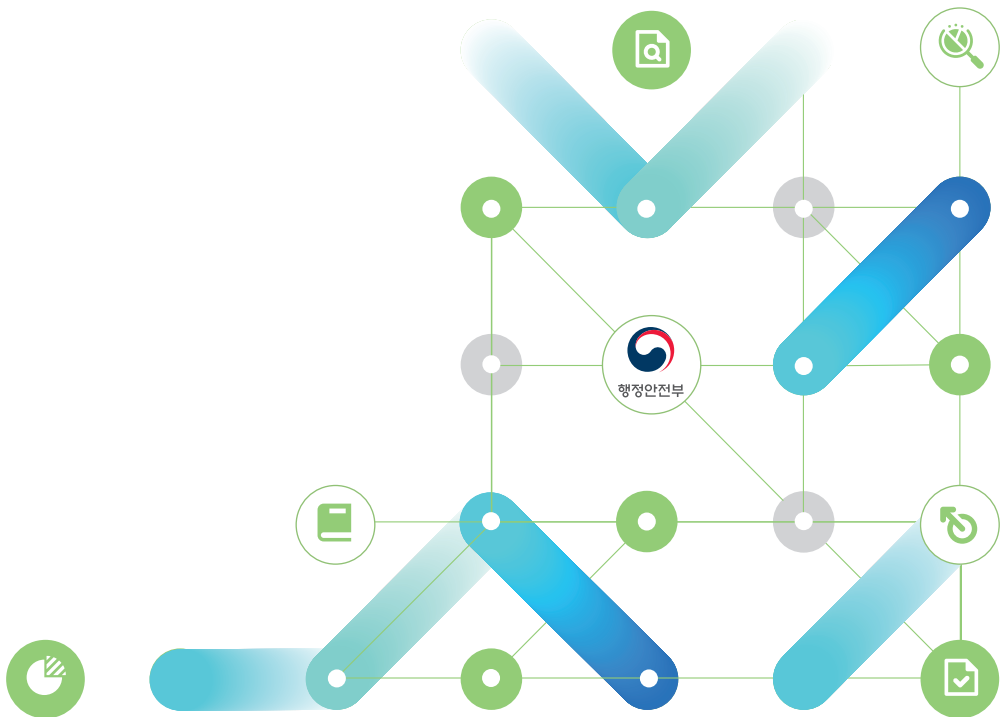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안착 성과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양원탁, 박진경



▣ 참여연구진

저 자 양원탁, 박진경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상향식·맞춤형 활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생활인구 산정, 특례 도입 등을 지원체계를 마련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획일적인 법·제도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추어 규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행정적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지니며, '23년 36건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 적용 특례가 실제 얼마나 활용되고, 지역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환류가 필요한 상황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지역 현장 활용 현황과 현장 안착 수준을 조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 안착 내실성을 심층 분석하여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제화된 특례 현황을 분석하고,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특례의 현장 적용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파악
-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관할 시도를 대상으로 특례의 활용 목록, 특례별 연계 사업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례의 활용 수준과 추진체계 구축 정도, 지역 기여도, 현장 적용 저해요인 등 현장 안착을 둘러싼 인식을 조사

- 심층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구체적인 현장 활용 성과와 내실성을 분석하고, 성공 및 장애요인에 기반한 확산 및 개선 요소를 도출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함

2.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1) 기본 방향

□ 현장 안착의 질적 성과 중심 특례 정책으로 전환

- 특례 정책의 초점을 개수에서 활용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목표인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새롭게 정립
- 활용도가 높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타 인구감소지역으로 홍보·확산할 수 있도록 함
- 활용도가 낮거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도모

- 인구감소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서비스의 축소, 유희 시설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확대
 - 기존·유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생활서비스 유지,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고도화
- 인구 증가와 개발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제도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

□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도모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특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
- 특례가 사업부서 단위의 산발적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사업부서와 인구감소 대응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의 특례 활용에 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성과에 따른 실무자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인 특례 활용 환경 조성

2) 기존 특례의 활용도 개선·보완과 현행 제도 개선

□ 인구감소 대책 현행 특례 개선

- 소관 부처의 장관이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도록 함
- 특례가 추상적이거나 구속력이 부족한 경우 특히, 교육 등 중요한 시책의 경우에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례의 조문을 수정함
-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주거·공유재산 특례 등은 하위법령에 구체적 근거 부재로 현장 활용이 어려우므로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규정
- 조례로 범위와 요건을 정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조례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협의제도 완화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생활서비스 축소 등 복합적인 문제는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님
- 인구감소지역에서 복지사업 신설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사업 설계와 추진에 제약이 발생

-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협의·조정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조문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 등을 설득하며,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업무는 높은 전문성과 행정 부담을 수반하나 인센티브는 부족하여 담당자의 열정을 이끌어내기에 한계
-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상 예산 절감액에 따라 포상하는 창안상여금 등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담당자 성과에 따른 성과에 따른 포상을 확대
-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

□ 현장 활용 성과 우수 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산

- 지자체에서 특례를 새롭게 도입·활용할 때 발생하는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대한 홍보·확산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기존의 「정책·사업 부문」과 함께 「특례 활용 부문」을 확대·구분하여, 특례를 활용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별도로 발굴하고 시상
-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담당자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특례 활용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확산 기반을 마련

3)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특례

- 국고보조 시설에 대한 엄격한 용도 제한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휴·자원의 활용을 저해하여 다양한 활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고보조 시설 중 유휴시설 방치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를 협의로 완화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주도의 부처간 협의체에서 조정하도록 특례 신설을 제안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노후·유휴시설을 주거·창업·생활서비스 공간 등으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하여 시설 방치에 따른 인건비 등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허가 특례

-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나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 경관 변화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보유한 사업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방식과 이익공유 방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참여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특례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이익이 지역 내부에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4) 협력적 추진체계 정비

□ 중앙부처간 정책소통 강화

- 상향식·맞춤형으로 추진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은 다수의 중앙부처 시책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행안부의 정책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 필요

- 현행 지방시대위원회·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실무 차원의 정보공유와 공동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초고위급 회의체로서 세부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한계 발생
- 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간 협력과 정책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각 부처 국장급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여 안전 사전심의, 부처·지자체 간 이견 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단위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갖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

□ 지자체 내 추진체계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내 인구정책 주무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업 체계 부재로 인하여 특례에 관한 정보가 사업부서에 충분히 전달·연계되지 못하거나 담당자 순환보직으로 인해 활용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지자체 내부에 인구정책 주무부서를 간사부서로 하여 다수의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특례의 발굴·공유, 검토·조정, 실행·연계, 성과·환류 등 모니터링 전 과정을 협업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 제안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특례 활용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재정·지역개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례 활용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능을 보강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1
3. 연구의 주요내용	13

제 2 장 법·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령과 특례 현황	17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7
2. 개별법령 및 지침 검토	3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3
1. 인구감소지역 특례 관련 연구	43
2. 인구감소지역 규제 합리화 관련 연구	4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50
1.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에 대한 진단 필요성	50
2. 지역과 특례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50
3. 근거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51

목 차

제 3 장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활용 현황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55
1. 조사 개요	55
2. 조사 참여자 현황	57
제2절 조사 결과	58
1. 지역별 특례 활용 현황	58
2. 특례별 활용 현황 및 사례	6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4
1. 지역 현장의 특례 활용 현황과 선도사례 확산의 필요성	84
2. 특례 이행을 위한 자치입법 성과와 내부 집행 지침의 고도화 과제	84
3. 개별 특례의 활용도에 근거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	86

제 4 장 특례 활용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인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91
1. 조사 개요	91
2. 응답자 현황	92
제2절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94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전략 분야	94
2.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기여도	96
3. 지자체의 특례의 활용 수준	99
4. 특례의 현장 안착 저해요인	104
5. 신규 특례 제안 및 건의사항	106

제3절 요약 및 소결	110
1. 특례 활용 수준 진단과 추진체계상의 한계	110
2. 특례의 기여도 인식 차이와 정책 수요의 다변화	111
3. 현장 안착 저해요인으로서 지역 현장 수요와의 불일치	113

제 5 장 사례 연구를 통한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및 사례 선정	117
1. 분석 개요	117
2. 사례 선정	120
제2절 경북 본청·영덕군	121
1. 사례 개요	121
2.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	122
제3절 경남 남해군	133
1. 사례 개요	133
2. 특례의 현장 활용 내실성 분석	134
제4절 요약 및 소결	146
1.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 활용의 중요성	146
2. 현장 안착을 위한 지자체 추진체계와 실무자 역할	147
3. 우수사례 확산과 제도개선의 선순환 구조 마련	148

목 차

제 6 장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53
1. 현장 안착의 질적 성과 중심 특례 정책으로 전환	153
2.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도모	154
3. 부처간 및 지자체 내부 정책소통과 협업체계 강화	156
제2절 기존 특례의 활용도 개선·보완	159
1. 인구감소대책 현행 특례 개선	159
2.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협의제도 완화	163
3. 지자체 담당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 마련	165
4. 현장 활용 성과 우수 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산	167
제3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신설	17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1
2.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허가 특례	173
제4절 협력적 추진체계 정비	176
1. 중앙부처간 정책소통 강화	176
2. 지자체 내 추진체계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177
제5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82
1. 해당 특례	182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해당 특례 신설(안)	183
참고문헌	185
부록	189

표 목차

표 1-1	분석 대상 특례 목록	7
표 1-2	연구 방법	12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36건)	29
표 2-2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31
표 2-3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32
표 2-4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비자 관련 비자 유형	34
표 2-5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6
표 2-6	2024년 추가 발굴된 인구감소지역 특례 목록	42
표 2-7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과정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44
표 2-8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방향	49
표 3-1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활용 현황 조사 개요	56
표 3-2	조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57
표 3-3	인구감소지역의 활용 중인 특례 수	58
표 3-4	분야별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 수	59
표 3-5	분야별 활용되고 있는 특례의 수	60
표 3-6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사례 수	61
표 3-7	특례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62
표 3-8	특례 활용을 위한 지침 제정 현황	63
표 3-9	특례를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현황	64
표 3-10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보육·돌봄)	65
표 3-11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보육·돌봄)	66
표 3-12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교육)	67
표 3-13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교육)	69
표 3-14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의료·보건)	71
표 3-15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의료·보건)	72

표 목차

표 3-16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주거·교통)	74
표 3-17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주거·교통)	75
표 3-18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문화·관광)	77
표 3-19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문화·관광)	78
표 3-20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외국인)	79
표 3-21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외국인)	79
표 3-22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산업·일자리 분야)	81
표 3-23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산업·일자리) ..	81
표 3-24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기타 분야)	83
표 3-25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기타 분야)	83
표 3-26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 특례 목록	86
표 3-27		지역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특례 목록	87
표 4-1		인구감소지역 특례 담당자 인식조사 개요	92
표 4-2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지자체 인식조사 참여자 현황	93
표 4-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집중하는 전략 분야(1순위)	95
표 4-4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에 기여 정도 ...	97
표 4-5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지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98
표 4-6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단계 수준	100
표 4-7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특례 사례	102
표 4-8		특례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한 행정적 추진체계 구축 현황	104
표 4-9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저해 요인	106
표 4-10		신규 특례 제안 및 특례 관련 건의 사항	108
표 5-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내실성 분석 개요	118
표 5-2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내실성 분석 틀	119
표 5-3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특례 사례 조사 결과	120

표 목차

표 5-4	경북 본청·영덕군의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 개요	121
표 5-5	경상북도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 현황	122
표 5-6	경북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 현황(2025.12.30. 기준)	123
표 5-7	영덕군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자 현황	124
표 5-8	희망이음사업 추진 성과(영덕군 기준)	125
표 5-9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구성	127
표 5-10	영덕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128
표 5-11	희망이음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129
표 5-12	영덕군 지역특화비자 관련 현장 설명회 개최 현황(2024~2025)	131
표 5-13	영덕군 산불 구조 외국인 선원의 거주 비자 특례 및 정착 사례	132
표 5-14	인구감소지역 특례 집행을 위한 조례 개정 현황(남해군)	133
표 5-15	거주목적 수도권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매각 관련 조례 내용	136
표 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원 강화(예시)	161
표 6-2	2025년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 발표사례 주요 내용	169
표 6-3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 및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안)	170
표 6-4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특례 추진체계 정비안	179
표 6-5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특례 TF 운영 프로세스(안)	180
표 6-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신규 특례 신설(안)	18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14
그림 2-1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35
그림 2-2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제도 도입 여건과 추진방향	46
그림 2-3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및 특례제안 현황	47
그림 2-4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검토 방향과 중점과제	48
그림 5-1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경북) 및 가족센터(영덕군) 홈페이지	130
그림 6-1 2025년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 개최	168
그림 6-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방향 전환	174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방소멸 위기 증대와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추진

- 저출산 심화로 인한 국가 총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격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 50%를 초과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51.0%에 달함
 - 수도권의 GRDP 비중 역시 2024년을 기준으로 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뿐 아니라 경제적인 집중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상향식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1년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설치되었음
 - '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상향식의 인구활력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소멸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중요성

-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통한 재정적 지원,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을 통한 인구활력 증진, 특례 지원 등이 있음

- 특례는 획일적인 법·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규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행정적 수단으로서 상향식·맞춤형으로 추진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이재명 정부는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 해소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특례의 현장 안착 성과 점검과 이에 기반한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는 '23년 36건이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들 특례가 실제 지역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도화된 특례가 조례, 조직 등 현장에서 구현되어 작동 중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약 60건에 달하는 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특례 도입을 위한 조례나 행정 프로세스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지자체에서 특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나 예산은 어떤 수준인지, 특례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요인이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및 현장 안착 현황, 사례 기반의 성공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환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례의 지역 현장 안착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성공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성과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정책의 정책적 환류 방안 모색이 필요
 - 실제 특례가 지역 현장에서 활용되고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에 기반하여 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지역 현장 안착 및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례 관련 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확인하고, 법령상 특례의 지자체 현장 안착을 둘러싼 쟁점 요소를 검토
 - 지자체의 특례 활용 목록, 특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및 행정 프로세스 구축, 특례와 연계된 사업 및 예산 투입 등을 조사하여 실제 지자체의 특례 활용 현황 수준을 파악함
 - 지자체 특례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기여도, 현장 안착 수준, 장애요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 수요를 파악함
 -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이용 및 수혜대상, 행·재정적 집행 기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법·제도적 적용환경 등 현장 안착 성공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하여 특례의 현장 적용 내실성을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현행 법·제도의 개선, 신규 특례의 제안, 추진체계 정립 등 현장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부터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2031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
 - 2023년은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법적 근거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원년으로, 지난 3년간(2023~2025) 추진된 특례의 지역 안착 현황과 실질적인 내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계열의 범위를 확보함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6.10.)과 「'27~'31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차기 정책에서의 제언과 고도화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2031년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함

□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 사항이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방자치단체임
 - '26년 2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18개가 포함되며, 향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지자체를 포괄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사례분석의 경우, 현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중에서 특례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기관 협의를 통해 시·군·구를 선정
 - 사례 분석의 구체적인 대상은 특례의 활용도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특례의 활용도와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는 크게 인구감소지역 특례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특례의 현장 안착 현황, 사례 기반 내실성 심층 분석,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구성
 - 법·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에 법제화된 특례의 분야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특례 도입상의 쟁점요소를 파악
 - 특례의 현장 안착 현황에서는 분석 대상 시·군·구 대상 특례의 현장 적용 현황, 조례나 지침 및 추진체계 구축 현황, 연계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
 - 사례 기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에서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수요 부합성, 행·재정적 집행 기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법·제도적 적용환경을 중심으로 성공 및 장애요인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 정책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실행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함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는 '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발굴되어 개별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도입된 특례 등 60개를 대상으로 선정
 - 보육·돌봄(5), 교육(12), 의료(4), 주거/교통(14), 문화관광(10), 외국인(3), 산업/일자리(6), 기타(6) 등 60개로 구성

【표 1-1】 분석 대상 특례 목록

구분	내용		비고
보육 / 돌봄	1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1조
	2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 가능	
	3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사업 지침
	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봄비 교통비 지원 확대	사업 지침

구분		내용	비고
교육	6	유·초·중·고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2조
	7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분교를 폐교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 불구하고, 유치원/학교의 교육경비 보조 가능	
	9	유치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10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11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	
	12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13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우선적 행·재정적 지원 가능	
	14	지방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 위해 교원/시설·설비 확보 등 필요한 지원 가능	
	15	인구감소지역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해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	
	16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 수립	
	17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법 22조의2
의료	18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3조
	19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 시책 수립·시행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20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	
	21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구분	내용	비고
주거 / 교통	22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4조
	23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24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	
	25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	
	26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 이용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	
	27 인구감소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28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29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30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내항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지원	
	31 도선 면허 발급·신고시 시설기준 완화	
	32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수도법 제5조의2
	3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가이드라인 (‘26.지정)
	34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가이드라인 (‘26.지정)
문화 관광	35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세컨드홈)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36 인구감소지역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5조
	37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학예사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38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39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40 문화·예술·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구분		내용	비고
	41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도농교류법
	42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43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44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45	관광단지 지정 규모 완화 및 개발부담금 면제, 인구감소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조성	관광진흥법 제52조
외국인	46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지역특화비자 등)	인구감소지역법 26조
	47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업무처리요령
	48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산업/ 일자리	49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8조
	50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51	일자리 정보 제공, 컨설팅 등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17조
	52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16조
	53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규정
	54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 완화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기준 완화	지침
기타	55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14조
	56	인구감소대응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협약 체결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10조
	57	노후·유휴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 가능	인구감소지역법 27조
	58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구감소지역법 24조의2
	59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60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로 양여 허용	매뉴얼 마련

2. 연구의 방법

□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관련한 법·제도, 선행연구 등 문헌 고찰

-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동향, 관련 계획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특례의 입법 취지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개별 법령상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제도화 현황과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정책 추진 동향을 파악함
 - 국책 및 지방연구기관 정책보고서, 학술 연구, 행정자료, 각종 언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과 관련한 주요 쟁점 또는 고려사항을 검토함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특례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특례 현황과 활용 사례, 이에 대한 행정적 프로세스, 제도적 기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함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활용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지자체 실태조사 수행
 - 특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지침, 담당부서나 담당자 설정, 특례와 연계된 사업 및 예산 규모가 어떤지 등 현장 활용 현황을 조사

□ 지자체 담당자 대상 특례 현장 안착에 관한 인식조사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특례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의 기여도, 현장 안착 수준 등 지역 현장 안착을 둘러싼 인식조사를 수행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기획부서, 인구감소 대응부서,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수준과 추진체계 구축 정도를 포함한 현장 안착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 나아가, 특례의 지역 기여도와 도움 영역, 현장 적용을 둘러싼 장벽 등 저해요인, 신규 특례에 관한 수요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 수행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과 내실성에 관한 사례 분석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인터뷰 중심의 현장 밀착형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특례의 현장 작동 기제와 성과 창출 요인을 분석
 - 사례 선정은 현장 안착 현황(제3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현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선정
 - 분석 틀은 특례의 현장 안착 및 성과확산 요소를 고려하여 ① 지역수요 부합성, ② 행·재정적 집행기반, ③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④ 법·제도적 적용 환경으로 구성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및 실효성 제고 관련 전문가 자문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관련 주요 쟁점 파악, 실효성 제고 방안 설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수행
 - 인구감소지역 특례 관련 법·제도, 행정·정책, 인구, 도시계획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특례의 현장 안착 실태 관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
 - 특례의 현장 안착 관련 쟁점(현장 안착 병목지점 등),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안착 확산 방안,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설정 등

| 표 1-2 | 연구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문헌조사	법·제도 및 정책 동향, 선행연구 검토(2장)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관련 개별법령 •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언론기사, 학술자료 등
조사·분석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지역 활용 현황(3장) 및 담당자 인식조사(4장)	• 지자체 특례 관련 담당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례 세부 목록 - 특례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행정 프로세스, 연계 사업 등 •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 등에 대한 인식조사
인터뷰 및 사례조사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에 관한 심층 사례분석(5장)	• 사례지역 담당 공무원 대상 인터뷰 조사 • 언론자료, 보도자료 등 관련 문헌 검토 • 행정적 집행기반, 현장 적합성, 특례 적용 성과 등
전문가 자문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제고 방안(5장)	• 법·제도, 행정·정책, 인구, 지역·분야 등 고려 • 학계 및 중앙·지방 연구기관 전문가 대상

3. 연구의 주요내용

□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법제화된 특례의 현황을 개별 특례별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현장 적용상의 쟁점을 분석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현황 조사

-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관할 시도를 대상으로 특례의 활용 목록, 특례별 연계 사업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
 - 어떤 특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특례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행정 추진체계는 마련되었는지, 연계사업과 예산 현황은 어떠한지 등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관련 인식조사

- 특례의 활용 수준과 추진체계 구축 정도, 지역 기여도, 현장 적용 저해요인 등 현장 안착을 둘러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
 - 지역유형과 소속부서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에 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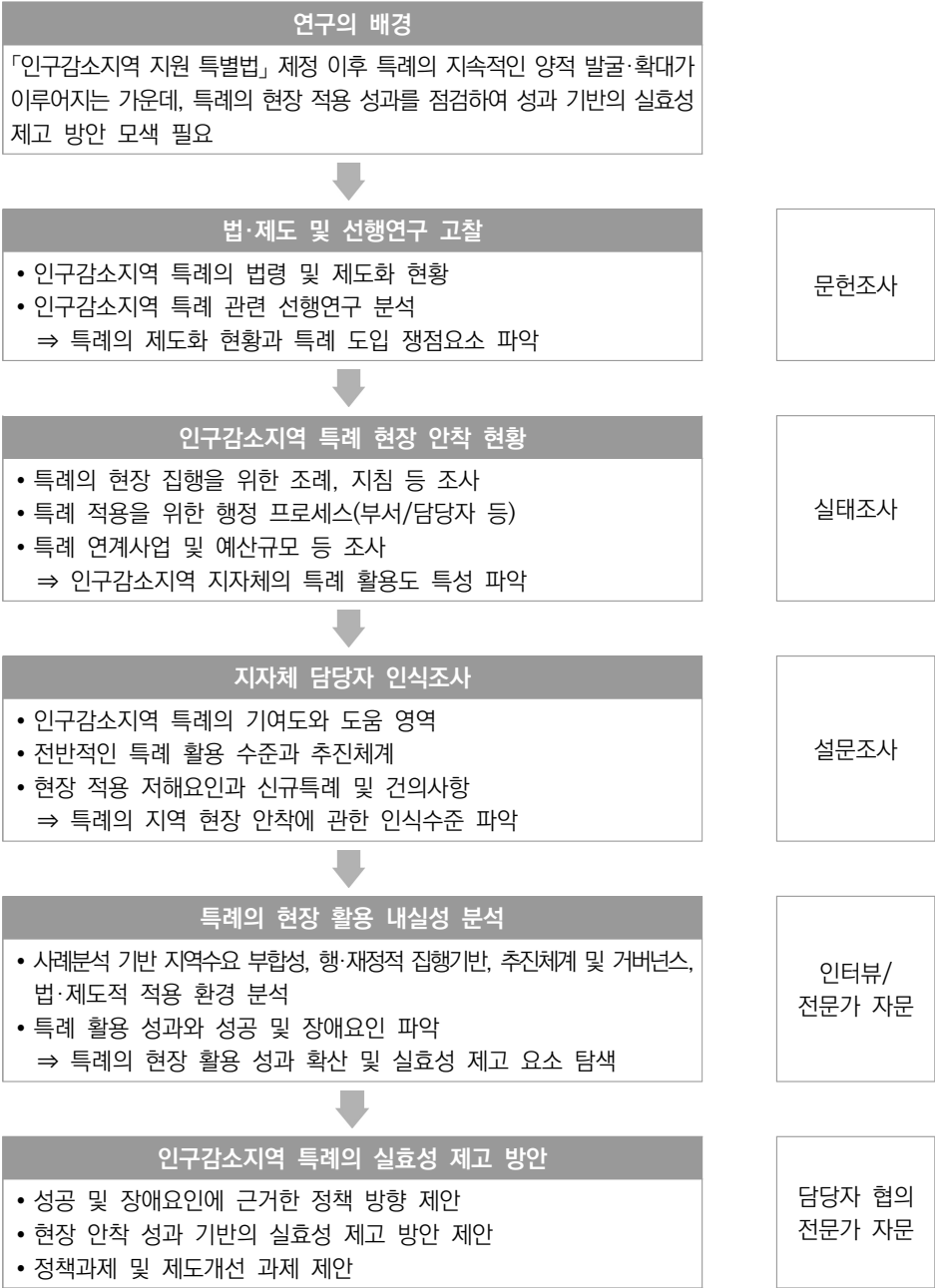
□ 사례 분석을 통한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

- 특례의 현장 안착 실태와 내실성을 지역수요 부합성, 행·재정적 실행기반,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법·제도적 적용 환경으로 구성하여 심층 분석
 -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등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 및 제도개선안을 제안함

| 그림 1-1 | 연구의 흐름



제 2 장

법·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령과 특례 현황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인구감소지역 관련 법령과 특례 현황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 제정 목적

- 정부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으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인구 유출의 악순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도모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타 법률과의 관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주도하며 상호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책무를 지님(제3조)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특화된 발전을 도모해야 함(제1항)
 - 국가는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지원해야 함(제2항)
 -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을 넘는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제3항)

- 동법 제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있어 해당 법률의 우선적 지위를 명시하고, 관련 법정계획과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규제 특례에 대해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타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함(제1항)
 - 지방시대 종합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 및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제2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의 원칙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은 기초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수립 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민간 참여와 자원 확보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법률 제5조)
 - 시·군·구의 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계획을,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
 - 지자체는 중점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계획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는 필요한 재원을 계획적 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 광역, 국가로 이어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 전략, 우선 중점과제,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제6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계획 간의 효율적 연계 및 조정, 지자체 상호 간 협력 방안,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의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시책, 특례 적용, 재원 조달 및 배분 등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 기관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제8조)
-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전문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7조)
 - 시·도 및 시·군·구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 평가, 기관 간 협력 방안 도출 등의 핵심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등 기존 유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정함(제9조)

3) 특례 및 지원사항

□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및 우선 지원

-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약 체결과 협약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규제 개선 등의 이행(제10조)
 -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계획을 묶어 일괄적으로 국가와 협약을 맺을 수 있음
 - 체결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계획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 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간 ‘생활권’ 설정과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 지원(제11조)
 -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음
 - 생활권을 설정한 지자체는 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연계·협력 사업(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에 대해 시설 설치와 서비스 운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과 도시 간의 상생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도농 간 교류·협력 활동 시책에 대한 우선 추진과 지원(제12조)
 -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교류 촉진 사업 및 프로그램, 농어촌 체험·휴양 활동, 지역자원조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국가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이나 사업 추진 및 공모 시 일정 비율을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제13조)
 - 국가 지원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의 인구감소 위기 심각성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이 재정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14조)
-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조례를 통해 생활인구에게도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함(제15조)

-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법 제16조)
 -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유관 기관 간 교류 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1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역량 강화 시책을 수행하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주민 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 할 수 있음(제3항)
-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 및 중장년층 등의 일자리 확충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제17조)
 -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취업 시 임금 보조, 창업 시 비용·기술·컨설팅 지원, 거주 시 주택 제공 및 수리·임차 비용 지원, 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지원할 수 있음(제1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 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과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우선 지원 규정을 명시(제1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의 연계 의무를 명시(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보육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환경 개선 지원 규정을 명시(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음(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 교육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제22조)

- 인구감소지역의 유치원·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공립유치원,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제2항)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제6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 교육시설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제8항),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9항)

○ 인구감소지역의 유치원·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지원 특례

-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3항)
-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외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해야 함(제12항).

○ 인구감소지역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 교육부장관과 지자체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연계 등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7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대학에 대하여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10항), 해당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1항)

□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제22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지역 학생의 인구감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지원함(제22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항)
- 시·도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3항)

□ 의료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제23조)

-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진료 사업 추진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이나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해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문 진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음(제2항)
- 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여건 개선 및 의료인 확보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제3항)
-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 지정 및 확충 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의료시설·인력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
 -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5항)

□ 주거·교통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제24조)

-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노후주택 개선에 관한 지원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의 신축 및 개수·보수·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대부하거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제3항)
-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우선 설치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및 도선사업 관련 교통 지원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주민 및 차량의 선박 이용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5항)
 - 관할관청은 도선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 면허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면허 발급이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음(제7항)
 - 위 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함(제8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24조)

- 인구감소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특례
 -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1항)
 -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이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함(제1항)
 -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은 시·군·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함(제2항)

□ 문화·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제25조)

-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관 및 박물관·미술관 설립 요건 완화 특례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도서관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등록요건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1항)
 -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2항)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및 사업 활성화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문화·예술·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시설 기준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해 순회 공연·전시 직접 제공 또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인구감소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6항)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26조)

-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요건 완화 특례
 -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자)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1항)
-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행정 접근성 지원

-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출입국·재외동포·국적 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제2항 제1호)
-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의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외국인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제2항 제2호)

□ 노후·유희시설의 정비 및 활용(제27조)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의 관리 실태 점검 및 활용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희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희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활용 촉진을 위해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희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2항)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특례(제28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호)
- 중견 및 중소기업의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가 중소기업이나 특정 매출액 미만의 중견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제2호)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근로자 고용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호~제5호)

4)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

□ 인구감소지역 실태조사 및 대응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및 지방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인구, 경제·사회·문화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2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음(제30조)

□ 정책 정보 종합 관리 및 추진 실적 점검·평가 체계 구축

- 국가는 지자체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 시책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제32조)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보고서를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제32조)

□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포상, 홍보와 확산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33조)
 -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제33조)

□ 인구감소 예방관리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4조)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는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 또는 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음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36건)

구분	내용
보육 (3)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21)
	(국가·지자체)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부채납·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가능(§21)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21)
교육 (11)	(교육감) 유·초·중·고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22)
	(교육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분교를 폐교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22)
	(시·군·구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불구하고, 유치원·학교 교육 경비 보조 가능(§22)
	(교육부장관) 유치원·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22)
	(교육감)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22)
	(교육감)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22)
	(교육부장관·지자체장)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22)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가능(§22)
	(국가·지자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및 시설·설비 확보 등에 필요한 지원 가능(§22)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하여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22)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22)

구분	내용
의료 (4)	(국가·지자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23)
	(국가·지자체)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23)
	(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23)
	(시·도지사)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23)
주거·교통 (6)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24)
	(국가·지자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24)
	(지자체)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24)
	(국가·지자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24)
	(국가·지자체)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24)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24)
문화·관광 (5)	인구감소지역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25)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25)
	(국가·지자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25)
	(국가·지자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25)
그 외 (7)	(행안부장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가능(§14)
	(법무부장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26)
	(국가·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의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28)
	(국가·지자체) 인구감소대응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협약 체결 가능(§10)
	(지자체) 노후·유휴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 가능(§27)
	(국가·지자체)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가능(§16)
	(국가·지자체) 일자리 정보 제공, 컨설팅 등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17)

주: 음영이 있는 항목은 규제특례(9건), 음영이 없는 항목은 행·재정적 지원 특례(27건)를 의미

2. 개별법령 및 지침 검토

1)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도입 배경

- '24년 4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인구감소지역의 '3대 인구(생활·방문·정주)'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생활·방문·정주인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인구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표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정주인구)으로 구성

□ 세컨드홈 활성화

- 세컨드 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유지함
 -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등)는 제외하되, 접경지역(강화·옹진·연천) 및 광역시 소속 군 지역(군위)은 포함됨
 - 주택 요건으로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됨
 - 지원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

【표 2-2】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Delta 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취득세: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법 25%+조례 25%) |
|---|

표 2-3 |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구분	기존	변경	
감면대상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 등본상_배우자, 미혼 30세미만 직계비속(동거인 제외)	동일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소재 주택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 부산(동구·서구·영도), 대구(남구·서구) 제외	-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소재 주택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 부산(동구·서구·영도), 대구(남구·서구) 제외 (단, 수도권 접경지역(강화·옹진·가평·연천), 광역시 군(군위)는 가능)	
		- 인구감소관심지역(전국 18개) 소재 주택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 부산(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대덕·동구·중구), 경기(동두천·포천)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 아닐것	동일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아닐것	동일	
주택요건	3억 이하 / 유상거래	- 감소지역 12억 이하 ※ 수도권 접경지역 3억 이하	유상·신축 가능
		관심지역 3억 이하	
감면한도	취득세 25%	- 취득세 25%(75만원 限) ※ 조례로 +25% 가능(150만원 限)	
일몰기한	2026.12.31	2028.12.31	
추징사유	3년 이내 주택 매각·증여	동일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지방 건설경기에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건설투자 보강 정책 발표('25.8.)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주택 가액기준 완화로 수요자 선택 폭 확대(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공시가 4억→9억원, 취득세 특례 취득가액 3억→12억)
 -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로 복원, 양도세 중과 배제 추진, 민간임대주택은 1년 한시로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 인구감소지역의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최소 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조세특례제한법 3종류에서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이상으로 완화
 - 기존 시·도지사가 보유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
 - 기존 관광단지에 부여되는 혜택(취득세 50% 감면 등)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면제, 관광기금 용자 우대(최대 △1.25%p),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을 추가 지원
 - 제천(의림지 리조트), 단양(단양역 관광시설), 고창(종합 테마파크)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약 1.4조 원 규모)을 우선 추진 후보지로 발굴, 추진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우수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
 - 참여 지자체는 '23년 28개에서 '24년 66개로 확대하고, 배정 쿼터 역시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이상 확대
 - 비자 발급 조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발급
 - 법무부의 쿼터 배분 완료 후 지자체별로 외국인 모집 및 추천 절차가 진행
- '25년 운영계획('25.2.)에서 지역특화비자 대상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한 총 107개로 확대
 - '22년 시범도입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25년 관심지역으로 대상 확대
 - 또한 단년도 공모에서 다년도(2년)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부담을 줄이고, 쿼터를 5,072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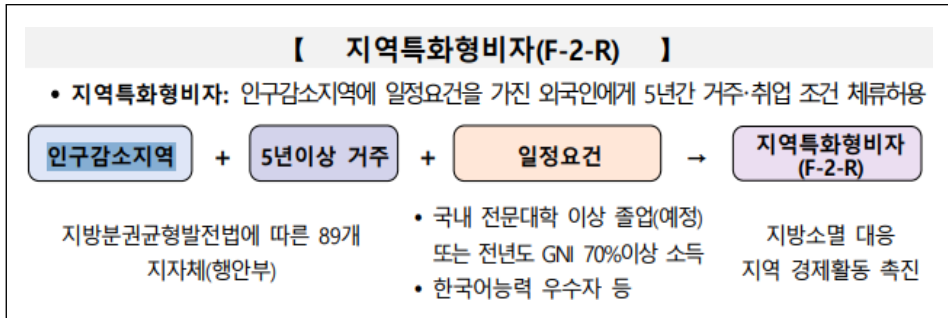
- 배우자의 취업 허용 및 비자 발급 2년 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취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유연성을 강화

표 2-4 |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비자 관련 비자 유형

구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 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부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기타	동반가족 허용(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5.2.20.)

| 그림 2-1 |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출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4.6.20.).

2)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방안 발표

□ 개요

- 정부는 2024년 7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통해 3대 분야, 26건의 맞춤형 특례 확대를 발표
 -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부문에 대한 특례 과제 발표

□ 정주여건 개선 특례(12건)

- 주요과제는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한 지자체 무상 양여,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5개로 구성
 -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5년 4월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폐교자산 활용에 관한 폐효활용법, 공유재산법 등의 복잡한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임

| 표 2-5 |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내용
목적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안내
법령 관계	• 폐교재산의 활용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폐교활용법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을 적용 • 교육감에서 지자체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 - 시도의 경우 공용 및 공공용 사용시 무상이관 가능(시군구는 수익매각, 양여로 가능)
폐교재산 활용 절차	• 폐교 결정 및 공표: 교육감이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교를 결정 • 의견 수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활용 계획에 반영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장·군수에게 요청하여 해당 부지 ‘학교’ 시설 지정을 해제 •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 폐교활용 계획 수립: 교육감이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대부·매각 등 세부 계획 수립 • 폐교재산 활용목적에 따라 토지지목(학교용지)과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 변경 • 폐교 활용(교육청 자체활용, 회계간 재산이관, 폐교재산 대부, 폐교재산 처분 등)

출처: 행정안전부·교육부(2025.4.)

- 연면적 200㎡ 미만 등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검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해당 특례는 현재 소위원회 심사 중으로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음
- 종합의료시설 및 체육시설 등 지방소멸 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함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입소를 허용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한 경우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함
 -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3호)에 반영

2. 2026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미혼자(사실혼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자

- 작은도서관 설립 도서 기준 보유량을 1,000권에서 500권 이상으로 완화함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일반과제는 소외도서 지역에 대한 신속한 신규 항로 개설 지원, 수도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등 5개 과제가 포함
 -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 항로 개설 시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항로 개설을 지원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생산 원가가 높은 소규모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수도법 개정('25.4.23.)

제3조(정의)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 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 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 선적비 지원 범위를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교통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내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 지급 대상을 해당 지역까지 확대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

- 정부의 교통비 지급 기준(이용자 부담 없음)의 변경:
 - 기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변경: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인구감소지역,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2026년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 추가 지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의 국고보조금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자부담 완화 등 우대 방안을 마련
 - 관련 공모사업에 인구감소지역 우선순위 반영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반영

-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농어촌지역 선정 평가지표 반영(가점)
 - 인구소멸지표에 따른 하위 지자체(1점)

-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등 중앙부처 공모 사업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을 지원
 - 공모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반영

□ 생활인구 확대 특례(7건)

- 주요과제로는 도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등 3개 과제가 포함
 -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임업용 산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권한을 위임함
 - 해당 특례의 경우 국회 심사에서 제외되었음
 - 지역 특색에 맞는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 적용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일반 과제로는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을 포함한 4개 과제가 포함되었음

- 농어촌민박의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자율 설정하게 하고, 투숙객 대상 식사 제공을 허용
- 농어촌정비법 개정 완료('24.12.20.)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25년 4회차 배정부부터)
 -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에 가점 5점 부여(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 가점항목: 기숙사 제공(농업)(10), 우수기숙사 설치/운영(1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 근속자 비율(15), 인구감소지역 사업장(5), 사업주교육 사전이수(5), 위험성 평가 인정(5)

- 주택 개선 사업 시 불명확했던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대학)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대학을 우대함(가점 2점 반영)
- 업무처리요령 및 2025년 모집 공고문 반영
- 비전문직 취업 비자(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고용허가 신청 기업에 가점을 부여함
- 업무처리요령 반영(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25년 4회차 배정부부터)
 -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에 가점 5점 부여(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 가점항목: 기숙사 제공(농업)(10), 우수기숙사 설치/운영(1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15), 인구감소지역 사업장(5), 사업주교육 사전이수(5), 위험성 평가 인정(5)

□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특례(7건)

- 주요과제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및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5개 포함
 - 국가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 센터 등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
 - 의원 발의('25년 상반기), 소위원회 수정 의견 단계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 기업을 추가
 - '25.10.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완료
-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출연연, 회사 등에게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진청 연구기반(장비 및 시설) 사용료를 면제
 -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공동 활용 규정(훈령 제1460호) 반영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을 위해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인구감소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이나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이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중략)..

바. 식육란수집판매업: 식육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일반 과제는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 기준 완화 등 2개 과제 포함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인턴 지원 제한 기준을 인구 감소지역에는 미적용하여 추가 인턴 인력 확보를 지원

•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침 반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한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1인 이상 20인 미만: 상시근로자의 70% 이내
- 20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의 50% 이내
- 5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내
- 단,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턴 채용 제한 인원기준 미적용

-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은 전체 교육시간의 10% 범위 내에서 온라인 교육을 허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2 교육훈련 시설의 설치·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상에 미반영

[표 2-6 | 2024년 추가 발굴된 인구감소지역 특례 목록

구분		소관부처	대상 법령	비고
1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	인구감소지역법	'25.10.2 시행
2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	
3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로 감면	행안부	"	
4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내항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지원	해수부	"	
5	도선 면허·신고 시 시설기준 완화	행안부	"	
6	수도권에서 이주 시 입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산림청	국회심사 제외	
7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국토부	"	
8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	
9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문체부	"	
10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산업부/중기부	"	
11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소위원회 심사중)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의원 발의 ('25.上.)
12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수도법	개정완료
13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농식품부	도농교류법	개정완료
14	국가여행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행시설 범위 확대 (소위원회 수정의견)	해수부	어촌·여행법	의원 발의 ('25.上.)
15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식약처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완료
16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로 양여 허용	교육부, 행안부	매뉴얼 마련	지침 변경 완료
1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지침	
18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여가부	"	
19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문체부	"	
2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26.지정)	
21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환경부	"	
22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고용부	업무처리요령	
23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제 우대	고용부	"	
24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농진청	훈령	
25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 완화	여가부	지침	
26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기준 완화	여가부	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인구감소지역 특례 관련 연구

□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 김동균(2025)은 법제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수행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모순적 구조를 지님
 - 상당수가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개별법 개정 없이는 단독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음
 - 법문상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은 재량적·임의적 표현이 많아, 중앙부처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나 행정 집행이 담보되지 않음
 - 인구감소지역이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타 법령상 지원 대상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만의 차별화된 특례 효과가 반감됨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실행 주체의 명확화, 재정 지원 특례의 실질화, 특례 발굴 및 도입 프로세스 개선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일본 신과소법과 같이 특례 부여 주체를 국가와 광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의무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사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수단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
 - 국가가 주도하여 특례가 제안되고 실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이용규제 평가와 같이 지역의 실질적 수요가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도입 방안 연구(2024)

- 양원탁·윤소연(2024)은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 활용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음
- 지자체 내부적 요인으로는 담당자의 이해도나 전문성 부족, 담당 인력 부족, 사업 부서의 관심도 부족과 부서별 업무 분산, 특례 적용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지자체 외부적 요인으로는 특례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례나 실질적인 지원 특례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음
-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성, 특례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의 분산, 소관부처-지자체간 협의의 어려움 등이 제기

[표 2-7]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과정상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구분		특례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시 지역	C시	• 행·재정적 지원 근거만으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 내 실무자는 현행 특례에 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 특례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 • 실제 특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과 재정지원 병행 필요
	E시	• 특례의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특례가 부족	-
	F시	• 지역 내 특례 업무 추진 인력 부족 • 지자체 대상 의견수렴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후속조치 어려움	• 특례 도입 과정에서 소관부처와 쌍방향의 소통이 필요함
군 지역	G군	• 특례 업무가 사업 부서별로 분산되어 건건이 협의/설득에 부담	• 특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시도/시군구 모두)
	H군	• 특례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음 • 특례의 일부는 실효성 문제로 적용하기 전의 부처 협의가 어려움	•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하는 특례 도입 표준모델(안) 마련 • 특례에 기반한 시책사업 추진 시에 부처 협의 및 행정부담 완화
	I군	• 기존 주민을 위한 특례가 부족 • 정책/지자체장에 따라 여건 변화	• 특례 발굴/활용 시 지역 실정을 반영 하고, 특례 활용 가이드라인 등 필요
	J군	• 중앙 주도로 지역 실정 반영 한계 • 소관부처/부서 분산으로 추진 한계	• 지자체 차원에서 특례추진단 구성 • 행안부/소관부처와 거버넌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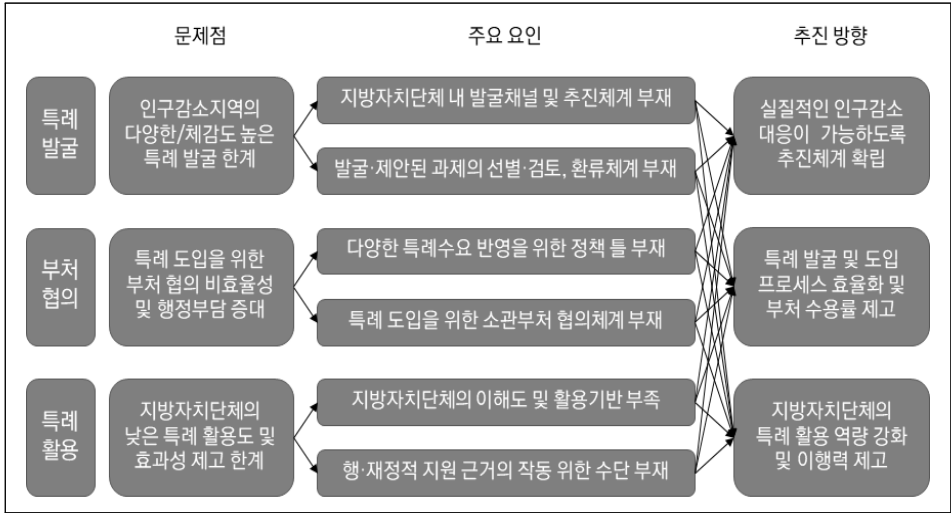
구분		특례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L군	• 지자체 발굴 특례의 낮은 수용률과 피드백 부족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성	• 특례 발굴/도입 시 유사한 지역 또는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
	M군	• 지역 내에서 사업부서 관심/협조 어렵고, 특례에 관한 이해도 낮음	• 특례 도입 시 관계 법령 등에 관한 논리적인 해석과 설명 필요
	N군	• 큰 규제에 막혀 특례 발굴/적용 한계 • 법률 기반의 특례가 어려움	-
	O군	• 특례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절차 / 인·허가 등 행정부담 있음	• 특례 활용 과정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
	P군	• 인구감소지역은 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높아 시책화가 어려움	• 특례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
구 지역	Q구	•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역 현안에 적용 가능한 특례 부족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례 • 발굴과 도입 지원이 필요함
	R구	• 특례 활용 중앙부처 사업 지침이 자주 변경되어 사업 추진에 혼란 있음	• 특례를 활용한 사업 추진 시 기준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하달 필요

출처: 양원탁·윤소연(2024)

- 해당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특례 발굴, 부처협의 특례 활용 측면에서 여건을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 특례 발굴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특례가 발굴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 문제의 주요 요인에는 지자체 내 다양한 발굴채널 및 추진체계 부재, 발굴 및 제안된 과제의 선별, 검토, 환류체계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특례가 발굴되고 활용되기 위한 상향식의 특례 제도와 이를 위한 다층적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주장
 - 부처협의 측면에서는 특례도입을 위한 부처 협의의 비효율성과 행정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 발굴 및 도입 프로세스 효율화 및 부처 수용률 제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주요 요인에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틀 부재, 특례 도입을 위한 소관부처 협의체계 부재를 지적
-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특례 도입 수요에 대응하여 특례의 발굴-선별-검토-협의-도입에 이르는 체계화된 프로세스 필요성을 주장
- 특례 활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특례 활용도와 효과성 제고 한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특례 활용 역량 강화와 이행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 문제의 주요 요인에는 지자체의 특례 이해도와 활용기반 부족, 행·재정적 지원 근거의 작동을 위한 수단 부재 등을 지적
- 체감도 높은 특례가 발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모니터링과 응수사례 확산, 기존의 정책 추진체계와의 연동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장

| 그림 2-2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제도 도입 여건과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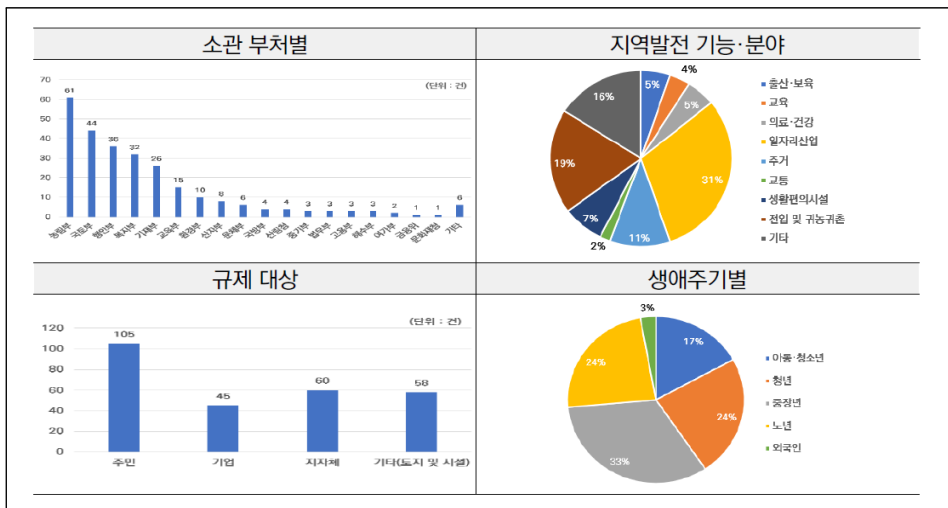
출처: 양원탁·윤소연(2024)

2. 인구감소지역 규제 합리화 관련 연구

□ 차미숙 외(2023),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 차미숙 외(2023)는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들의 지역발전 저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특구의 특례 운영 문제점으로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적용에 따른 체감도 저조,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 발굴 한계, 기업 애로 규제개선 및 특례 필요, 특구 제도의 개편과 고도화 필요 등이 제기
-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 및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소관부처는 농림부, 분야는 일자리·산업, 규제 대상은 주민, 생애주기는 중장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관부처는 농림부(61건), 국토부(44건), 행안부(36건), 분야는 일자리 산업(31%), 전입 및 귀촌(19%), 기타(16%) 순서로 규제개선 수요가 많음
 - 규제대상은 주민(105건), 지자체(60건), 기타(토지 및 시설)(58건), 생애 주기로는 중장년(33%), 청년(24%), 노년(24%), 순서로 개선 수요 많음

| 그림 2-3 |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및 특례제안 현황



출처: 차미숙 외(2023)

-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및 일자리 확충, 청년·은퇴자 등 지방 이주·정주 기반 촉진과 관련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음
 - 기업 지방이전·투자, 지역산업 진흥 특례 검토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 특구제도 개선, 지역 자율적인 특례 선택권 운용, 특례 상시 발굴과 적용 제안
 - 지역 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선, 규제특례 발굴 및 개선 프로세스 운영, 규제 특례의 전국화와 일반화 실행, 과감한 재정지원 시책과 규제 특례 연계 강화, 특구 관리체계 고도화를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촉진을 위한 단계별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아동·여성·청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을 위한 지역발전 요소별 규제개선 및 특례 발굴, 세대조화 및 연령통합형 정주공간 조성을 제안
 - 생활인구 증대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 체류 인구 증대와 소비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
-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실행방안으로 지역주도 상향식 특구 제도 고도화, 지역 주도 자율적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맞춤형 규제개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

「그림 2-4」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검토 방향과 중점과제



출처: 차미숙 외(2023)

[표 2-8] 인구감소시대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방향

중점과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방향	규제개선 및 특례 제안 예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지역산업 진흥 촉진	①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규제개선	- 지역 주도의 분권형 특구제도 개선 - 지역의 자율적인 특례 선택권 운용 - 규제 특례 상시 발굴 및 적용	- 지역발전특구 제도 개선 및 고도화 -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고용 유지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
	② 지역 향토· 특화산업 육성 특구 제도 개선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 발굴 및 상시 규제개선 프로세스 운영 - 규제 특례의 전국화와 일반화 실행 - 과감한 재정 지원 시책과 규제 특례 연계 강화 - 특구 운영·평가 등 관리체계의 고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선 및 특례 추가 발굴 - 인구감소지역의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적용 - 전통시장 지원 기준 규제 완화 등
생애 주기별 이주· 정주 촉진	③ 은퇴자의 지방 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단계별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이주 정착 및 생활단계 규제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연령제한 - 은퇴자 농지임대차 관련 규제 완화 -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적용 등
	④ 아동·여성·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임신·출산·교육, 문화·관광, 의료· 복지, 주거·교통·물류 등 지역발전 요소별 규제개선과 특례 발굴 - 세대 조화 및 연령 통합형 정주 공간 조성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특례 - 폐교 활용 촉진 및 용도 확대 -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 귀농 창업 및 주택구매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등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활력 증진	⑤ 생활인구 (외국인) 증대 관련 규제개선	농어촌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및 특례 선제 발굴	-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신청 개선 및 체류 기간 연장 - 외국인 근로자 취업근무처 특례 등
	⑥ 생활인구 (체류인구) 증대 관련 규제개선	체류인구의 증대와 소비력 확대	산림, 해수욕장, 문화재 등 지역관광 자원 활용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확대

출처: 차미숙 외(2023)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에 대한 진단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제도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큼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36건이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3년 인구감소지역법 시행 이후 36건의 특례가 도입되었고, '24년에는 26건이 추가 발굴되는 등 인구감소지역 도입 특례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지역 현장에서의 특례 활용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 필요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양적 확대 속에서 지자체 현장에서 해당 특례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실증 분석은 부재한 상황임
- 지자체의 현장 안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하향식의 특례 숫자 늘리기는 행정적 실효성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제는 특례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특례 활용 수준과 현장 안착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여 향후 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역과 특례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 특례별 특성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역별 상황은 매우 다양함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등 분야가 방대하고, 세부 개별 특례마다 요구되는 행정적 요건과 수용성이 각기 다름

- 나아가, 특례를 수용하고 집행해야 하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역시 각기 다른 지리적·인구학적 특성과 행·재정적 상황에 차이가 있음
- 이는 특례의 활용 여부나 기여 정도가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의 여건과 특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것임을 의미함

□ 개별 특례 단위에서 지역의 활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 필요

- 거시적, 일반론적 논의를 넘어 개별 특례 각각에 대하여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서 어떠한 특례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들 특례와 연계되어 추진 중인 구체적인 사업이나 조례 등의 현장 안착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특례별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

3. 근거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 개별 근거 법령 개정 등 특례의 적용 환경의 변동성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각각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개별 근거 법률과 지침 등에 산재되어 연계·작동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각 특례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 개정 등 활용 여건이 변화한다면 특례의 도입 목적을 잃거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특례의 적용을 둘러싼 법·제도 동향에 관한 모니터링 필요

- 특례 제도가 사문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법령 검토를 넘어서 개별 특례와 연동된 개별 근거 법률 및 운영 지침의 개정 동향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가 필요함

제 3 장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활용 현황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활용 현황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23년 인구감소지역법 시행과 함께 관련 특례가 도입되어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지역 현장에서의 활용 수준에 대한 면밀한 진단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도입된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 각각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활용 수준과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행정 프로세스 및 사업화 현황 등의 현황을 조사

□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지역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 11개 시·도 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4개임
 - 조사의 대상은 지자체별 기획부서 또는 인구정책 담당자이며, 개별 특례에 대하여 분야별 사업부서 담당자 협조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 시·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심지역만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단, 11개 시도 내 관심지역은 포함)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특례 수가 제한적이므로 관심 지역만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본 조사는 '26. 4. 27.(월) ~ 5. 8.(금)까지 2주에 걸쳐 진행
 - 다만, 일부 지자체 요청에 따라 '26.5.11.(월)~'26.5.15.(금) 1주일 동안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 방법 및 내용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인구 정책 담당자를 서면조사 기반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는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특례 목록과 각각에 해당하는 제도적 기반, 행정적 프로세스, 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시트 양식을 배포하여 진행하였음
- 조사 내용은 크게 지자체별 개별 특례의 실제 활용 여부와 활용 중인 특례에 대한 행정 프로세스, 제도적 기반 구축, 사업화 현황으로 구성됨
 - 지자체별 활용 중인 특례의 활용도 수준과 지침과 조례 제정, 사업화 등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지역, 분야, 특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활용 중인 특례의 구체적 명칭 및 핵심 내용
 - 특례 활용을 위한 위한 자치법규(조례) 및 지침 정비 현황
 - 특례 활용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현황
 - 특례와 연계된 사업 추진 현황(사업명, 내용, 기간, 예산 등)

【표 3-1】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활용 현황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 목적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도와 조례, 지침, 연계 사업화 등 구체적인 현장 활용 사례 등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 • 11개 시·도에 포함되는 인구감소관심지역(14개) ※ 관심지역만 포함된 시·도는 대상에서 제외	인구정책 담당자 (사업부서 협조)
조사 기간	• 본조사: '26.4.27(월) ~ '26.5.8.(금) / 2주간 • 추가조사: '26.5.11(월) ~ '26.5.15.(금) / 1주간	-
조사 방법	서면조사	행안부 협조
조사 내용	•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특례의 세부 현황 • 해당 특례의 조례/지침 및 전담부서/인력 구축 현황 • 특례 활용을 위한 조례, 지침 및 사업화 현황 등	엑셀시트

2. 조사 참여자 현황

-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11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 비중은 78.9%로 나타남
- 본청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11개가 모두 조사에 참여하였고, 89개 인구 감소지역은 74개(83.1%)가 조사에 참여하였음
 - 시 지역은 25개 지자체 중에서 15개(60.0%)가 참여하였고, 군 지역은 70개 중 57개(81.4%), 구 지역은 8개 중 7개(87.5%)가 조사에 참여하였음
 - 조사는 특례의 활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이 회수되지 않은 지자체는 활용 중인 특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계

【 표 3-2 】 조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참여지역수	조사대상수	비중
지역 구분	본청	11	11	100.0
	인구감소지역	74	89	83.1
	관심지역(광주·대전 제외)	5	14	35.7
시도 구분	부산	6	6	100.0
	대구	4	4	100.0
	인천	3	4	75.0
	경기	4	5	80.0
	강원	6	17	35.3
	충북	5	7	71.4
	충남	10	10	100.0
	전북	10	12	83.3
	전남	15	17	88.2
	경북	14	18	77.8
	경남	13	14	92.9
	광역시	11	11	100.0
기초 구분	시 지역	15	25	60.0
	군 지역	57	70	81.4
	구 지역	7	8	87.5
	합계	90	114	78.9

제2절

조사 결과

1. 지역별 특례 활용 현황

1) 특례 활용 현황 총괄

□ 특례 활용 수준

-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1개 이상 활용 중인 지자체는 73개(64.0%)로 나타났고, 활용하지 않거나 조사에 미참여한 지자체는 41개(36.0%)로 나타남
 - 활용 중인 특례가 있는 지자체의 비중은 본청(81.8%), 시 지역(44.0%), 군 지역(67.1%), 구 지역(75.0%)으로 나타남
 - 활용 중인 특례 수에 대해서는 3개 이하로 응답한 지자체가 43개(37.7%)로 가장 많았고, 10개 초과는 5개 지방자치단체(4.4%)로 나타남

| 표 3-3 | 인구감소지역의 활용 중인 특례 수

구분			없음/ 미응답	활용 중인 특례 있음					비중
				3개 이하	4~5개	6~10개	10개 초과	소계	
광역 본청			2 (18.2)	6 (54.5)	2 (18.2)	1 (9.1)	0 (0.0)	9 (81.8)	11 (100.0)
기초	지정 유형	인구감소 지역	27 (30.3)	35 (39.3)	12 (13.5)	10 (11.2)	5 (5.6)	62 (69.7)	89 (100.0)
		관심지역	12 (85.7)	2 (14.3)	0 (0.0)	0 (0.0)	0 (0.0)	2 (14.3)	14 (100.0)
	지역 유형	시 지역	14 (56.0)	6 (24.0)	2 (8.0)	2 (8.0)	1 (4.0)	11 (44.0)	25 (100.0)
		군 지역	23 (32.9)	26 (37.1)	9 (12.9)	8 (11.4)	4 (5.7)	47 (67.1)	70 (100.0)
		구 지역	2 (25.0)	5 (62.5)	1 (12.5)	0 (0.0)	0 (0.0)	6 (75.0)	8 (100.0)
	합계		41 (36.0)	43 (37.7)	14 (12.3)	11 (9.6)	5 (4.4)	73 (64.0)	114 (100.0)

□ 특례 분야별 활용 지방자치단체 수

-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가 많은 분야로는 주거/교통 분야가 36개(31.6%)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분야 27개(23.7%), 교육 분야 23개(20.2%) 순으로 나타남
- 11개 광역 본청은 외국인 부문이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가 7개(63.6%)로 가장 많았고,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이 35개(39.3%)로 가장 많았음
 - 25개 시 지역의 경우 주거/교통과 의료 부문에서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가 6개(24.0%)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이 4개(16.0%)로 두 번째를 차지
 - 70개 군 지역은 주거/교통 분야에서 특례 활용 지자체가 26개(37.1%)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18개(25.7%)로 두 번째를 차지
 - 8개 구 지역의 경우에는 보육/돌봄 분야에서 특례 활용 지자체 수가 4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 | 분야별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 수

구분			분야							지자체 수	
			보육/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관광	외국인	산업/ 일자리		기타
광역 본청			2 (18.2)	2 (18.2)	1 (9.1)	1 (9.1)	1 (9.1)	7 (63.6)	1 (9.1)	0 (0.0)	11 (100.0)
기초	지정 구분	감소 지역	20 (22.5)	21 (23.6)	20 (22.5)	35 (39.3)	16 (18.0)	19 (21.3)	17 (19.1)	12 (13.5)	89 (100.0)
		관심 지역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1 (7.1)	0 (0.0)	14 (100.0)
	지역 유형	시	2 (8.0)	2 (8.0)	6 (24.0)	6 (24.0)	4 (16.0)	4 (16.0)	3 (12.0)	2 (8.0)	25 (100.0)
		군	14 (20.0)	18 (25.7)	14 (20.0)	26 (37.1)	12 (17.1)	15 (21.4)	14 (20.0)	10 (14.3)	70 (100.0)
		구	4 (50.0)	1 (12.5)	0 (0.0)	3 (37.5)	0 (0.0)	1 (12.5)	1 (12.5)	0 (0.0)	8 (100.0)
	합계			22 (19.3)	23 (20.2)	21 (18.4)	36 (31.6)	17 (14.9)	27 (23.7)	19 (16.7)	12 (10.5)

주: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분야별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와 비중을 각각 산출

□ 분야별 활용 중인 특례의 수

- 60개 분석 대상 특례 중에서 88.3%에 해당하는 53개의 특례가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 본청에서는 18개 특례(30.0%)가 1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보육/돌봄 분야는 5개 특례 중 4개 특례가 활용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60개 특례 중에서 53개(88.3%) 특례가 활용되고 있고, 미활용 특례는 교육, 주거/교통, 산업/일자리, 기타 등에서 나타남
 - 시 지역에서 활용되는 특례는 29개(48.3%)로 나타났고, 의료 분야의 특례는 모두 활용되고 있으나, 문화/관광 특례는 10개 특례 중 3개가 활용 중임
 - 군 지역은 51개 특례(85.0%)가 활용되고 있으며, 보육/돌봄, 의료, 문화/관광, 외국인 분야 특례는 모두 1개 이상 지자체에서 활용 중임

[표 3-5] 분야별 활용되고 있는 특례의 수

구분			분야							합계	
			보육/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관광	외국인	산업/ 일자리		기타
광역 본청			4 (80.0)	2 (16.7)	1 (25.0)	5 (35.7)	2 (20.0)	3 (100.0)	1 (16.7)	0 (0.0)	18 (30.0)
기 초	지정 구분	감소 지역	5 (100.0)	9 (75.0)	4 (100.0)	12 (85.7)	10 (100.0)	3 (100.0)	5 (83.3)	5 (83.3)	53 (88.3)
		관심 지역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1 (16.7)	0 (0.0)	2 (3.3)
	지역 유형	시	3 (60.0)	5 (41.7)	4 (100.0)	8 (57.1)	3 (30.0)	1 (33.3)	2 (33.3)	3 (50.0)	29 (48.3)
		군	5 (100.0)	7 (58.3)	4 (100.0)	12 (85.7)	10 (100.0)	3 (100.0)	5 (83.3)	5 (83.3)	51 (85.0)
		구	3 (60.0)	1 (8.3)	0 (0.0)	3 (21.4)	0 (0.0)	1 (33.3)	1 (16.7)	0 (0.0)	9 (15.0)
	활용 중인 특례의 수			5 (100.0)	9 (75.0)	4 (100.0)	12 (85.7)	10 (100.0)	3 (100.0)	5 (83.3)	5 (83.3)
대상 특례 총수			5 (100.0)	12 (100.0)	4 (100.0)	14 (100.0)	10 (100.0)	3 (100.0)	6 (100.0)	6 (100.0)	60 (100.0)

주: 60개 분석 대상 특례 중에서 1개 이상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례 수를 의미함

2) 특례의 현장 활용 사례 현황

□ 특례 활용 사례 총괄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의 활용 사례는 380건으로 나타남
 - 광역 본청은 37건, 기초자치단체는 343건으로 나타났고, 지역 유형별로는 시 지역 59건, 군 지역 265건, 구 지역 19건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주거/교통 분야의 활용 사례가 87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76건, 20.0%), 보육/돌봄(63건, 16.6%)이 뒤를 이음
 - 광역 본청은 외국인 분야 11건(29.7%), 주거/교통 분야 10건(27.0%) 순으로 특례 활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유형별로 시 지역은 주거/교통(24건), 군 지역은 교육(61건), 구 지역은 보육/돌봄(7건), 순으로 특례의 활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사례 수

구분			분야							합계
			보육/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관광	외국인	산업/ 일자리	
광역 본청			7 (18.9)	5 (13.5)	1 (2.7)	10 (27.0)	2 (5.4)	11 (29.7)	1 (2.7)	37 (100.0)
기 초	지정 구분	감소 지역	56 (16.5)	71 (20.9)	32 (9.4)	77 (22.7)	32 (9.4)	25 (7.4)	30 (8.8)	339 (100.0)
		관심 지역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3 (75.0)	4 (100.0)
	지역 유형	시	4 (6.8)	5 (8.5)	7 (11.9)	24 (40.7)	5 (8.5)	4 (6.8)	7 (11.9)	59 (100.0)
		군	45 (17.0)	61 (23.0)	25 (9.4)	50 (18.9)	27 (10.2)	21 (7.9)	23 (8.7)	265 (100.0)
		구	7 (36.8)	5 (26.3)	0 (0.0)	3 (15.8)	0 (0.0)	1 (5.3)	3 (15.8)	19 (100.0)
	합계		63 (16.6)	76 (20.0)	33 (8.7)	87 (22.9)	34 (8.9)	37 (9.7)	34 (8.9)	380 (100.0)

주: 각 특례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의 수를 의미(동일 지자체에서 2개 이상 특례 중복 활용 가능)

□ 특례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 특례 활용을 위해 조례가 필요한 사례는 190건(50.0%)으로 나타남
 -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례 중에서는 시행 중인 경우가 168건(44.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미제정 14건(3.7%), 준비 중 8건(2.1%)으로 나타남
- 광역 본청은 특례 활용을 위해 조례가 필요한 사례가 총 10건(27.0%)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두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의 경우 조례가 필요한 사례가 21개(35.6%)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조례가 미제정된 사례는 3건(5.1%) 수준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조례가 필요한 사례 151건 중 134건에 대해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가 필요하나 미제정된 사례는 10건(3.8%)으로 나타남
 - 구 지역의 경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례는 8건(42.1%)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 시행 중인 사례는 7건, 미제정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남

| 표 3-7 | 특례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해당 없음	조례 제정 필요				합계
				미제정	준비 중	시행 중	소계	
광역 본청			27 (73.0)	0 (0.0)	0 (0.0)	10 (27.0)	10 (27.0)	37 (100.0)
기 초	지정 구분	감소 지역	162 (47.8)	14 (4.1)	8 (2.4)	155 (45.7)	177 (52.2)	339 (100.0)
		관심 지역	1 (25.0)	0 (0.0)	0 (0.0)	3 (75.0)	3 (75.0)	4 (100.0)
	지역 유형	시	38 (64.4)	3 (5.1)	1 (1.7)	17 (28.8)	21 (35.6)	59 (100.0)
		군	114 (43.0)	10 (3.8)	7 (2.6)	134 (50.6)	151 (57.0)	265 (100.0)
		구	11 (57.9)	1 (5.3)	0 (0.0)	7 (36.8)	8 (42.1)	19 (100.0)
	합계		190 (50.0)	14 (3.7)	8 (2.1)	168 (44.2)	190 (50.0)	380 (100.0)

□ 특례 활용을 위한 지침 마련

- 특례 활용을 위해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례는 161건(42.4%)으로 나타남
 -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례 중에서는 운영 중인 경우가 107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미수립 53건(13.9%), 마련 중 1건(0.3%)으로 나타남
- 광역 본청은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례가 총 21건(56.8%)으로 나타났고, 이 중 운영 중인 사례는 20건, 미수립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의 경우 지침이 필요한 사례가 30건(50.8%)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미수립된 사례는 7건(11.9%) 수준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지침이 필요한 사례 101건 중 56건에 대해 지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침이 필요하나 미수립된 사례는 44건(16.6%)으로 나타남
 - 구 지역의 경우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례는 9건(47.4%)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 운영 중인 사례는 8건, 미수립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남

【 표 3-8 】 특례 활용을 위한 지침 제정 현황

구분			해당없음	지침 마련 필요				합계
				미수립	마련중	운영 중	소계	
광역 본청			16 (43.2)	1 (2.7)	0 (0.0)	20 (54.1)	21 (56.8)	37 (100.0)
기 초	지정 구분	감소 지역	199 (58.7)	52 (15.3)	1 (0.3)	87 (25.7)	140 (41.3)	339 (100.0)
		관심 지역	4 (10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지역 유형	시	29 (49.2)	7 (11.9)	0 (0.0)	23 (39.0)	30 (50.8)	59 (100.0)
		군	164 (61.9)	44 (16.6)	1 (0.4)	56 (21.1)	101 (38.1)	265 (100.0)
		구	10 (52.6)	1 (5.3)	0 (0.0)	8 (42.1)	9 (47.4)	19 (100.0)
합계			219 (57.6)	53 (13.9)	1 (0.3)	107 (28.2)	161 (42.4)	380 (100.0)

□ 특례를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현황

- 특례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는 252건(66.3%)으로 나타남
 -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 중에서는 시행 중인 경우가 230건(60.5%)으로 나타났고, 사업 완료 10건(2.6%), 검토/준비 중 12건(3.2%)으로 나타남
- 광역 본청의 경우에는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가 33건(89.2%)이며, 모두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의 경우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가 40건(67.8%)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검토/준비 중인 사례는 5건(8.5%) 수준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 163건 중 148건이 시행 중이며, 사업완료된 사례는 8건(3.0%)으로 나타남
 - 구 지역의 경우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는 16건(84.2%)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 시행 중인 사례는 15건, 사업완료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남

【 표 3-9 】 특례를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현황

구분			해당 없음 및 미추진	연계사업 추진				합계
				검토/준비중	시행 중	사업완료	소계	
광역 본청			4 (10.8)	0 (0.0)	33 (89.2)	0 (0.0)	33 (89.2)	37 (100.0)
기 초	지정 구분	감소 지역	123 (36.3)	12 (3.5)	195 (57.5)	9 (2.7)	216 (63.7)	339 (100.0)
		관심 지역	1 (25.0)	0 (0.0)	2 (50.0)	1 (25.0)	3 (75.0)	4 (100.0)
	지역 유형	시	19 (32.2)	5 (8.5)	34 (57.6)	1 (1.7)	40 (67.8)	59 (100.0)
		군	102 (38.5)	7 (2.6)	148 (55.8)	8 (3.0)	163 (61.5)	265 (100.0)
		구	3 (15.8)	0 (0.0)	15 (78.9)	1 (5.3)	16 (84.2)	19 (100.0)
	합계			128 (33.7)	12 (3.2)	230 (60.5)	10 (2.6)	252 (66.3)

2. 특례별 활용 현황 및 사례

□ 보육·돌봄 분야

○ 보육·교육 분야의 5가지 특례는 49개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고(43.0%), 인구 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3)에 관한 특례의 활용도(14.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5)에 관한 특례 활용 지자체 비율(13.2%)이 두 번째로 높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특례(4)의 활용 지자체 비율(3.5%)이 가장 낮음

【표 3-10】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보육·돌봄)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1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	2 (18.2)	1 (4.0)	5 (7.1)	0 (0.0)	8 (7.0)
2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 가능	2 (18.2)	0 (0.0)	4 (5.7)	0 (0.0)	6 (5.3)
3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2 (18.2)	1 (4.0)	10 (14.3)	3 (37.5)	16 (14.0)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0 (0.0)	0 (0.0)	3 (4.3)	1 (12.5)	4 (3.5)
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1 (9.1)	2 (8.0)	9 (12.9)	3 (37.5)	15 (13.2)
활용 지자체 수		7 (63.6)	4 (16.0)	31 (44.3)	7 (87.5)	49 (43.0)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보육·돌봄 분야 특례의 사업화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3)에 관한 특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4)에 관한 특례의 경우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11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보육·돌봄)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1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	강원본청	• 어린이집 확충
		경북본청	• 어린이집 확충
		충남예산군	• 어린이집 확충
		충북옥천군	• 어린이집 확충
2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 가능	강원본청	• 어린이집 확충
		경북본청	• 어린이집 확충(장기임차)
		충남청양군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수당
			• 셋째 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영유아 양육비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 반당운영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3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강원본청	• 어린이집 기능보강
		강원정선군	• 10인미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누리반 인건비 추가 지원
		경북본청	• 어린이집 기능보강
		경북성주군	• 어린이집 영어특성화교육 지원사업
		대구남구	• 생애최초입학금지원계획
		대구서구	•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외 10개
		인천강화군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지원
		인천옹진군	•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전남강진군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전남신안군	• 신안군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운영 체제
		충남예산군	• 2026년 도 보육 특수시책사업
		충북옥천군	• 급식위생관리 지원 사업
			•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
			•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부산서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충남서천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경북본청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구군위군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구서구	•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산서구	• 아이돌봄 지원
		인천강화군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전남신안군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전남완도군	• 아이돌보미 지원
		충남서천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충북옥천군	• 옥천형아이돌봄지원사업

□ 교육

- 교육 분야 12개 특례는 47개 지자체(41.2%)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 중인 지자체가 1개 또는 전혀 없는 특례도 존재
 - 농어촌 유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17) 특례 활용 지자체는 12개(10.5%)로 가장 많았고, 교육경비 보조 특례(8)가 11개(9.6%)로 2위, 평생교육사업의 수립·추진 지원 특례(12)가 10개(8.8%)로 뒤를 이음
- 학교 설립 기준과 인가(11), 지방대학 교원·시설·설비 확보(14), 지방대학 재학·졸업생 임용·채용 지원(15) 특례의 활용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교육)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6	유·초·중·고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0 (0.0)	1 (4.0)	0 (0.0)	0 (0.0)	1 (0.9)
7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분교를 폐교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0 (0.0)	0 (0.0)	1 (1.4)	0 (0.0)	1 (0.9)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 불구, 유치원/학교의 교육경비 보조 가능	0 (0.0)	0 (0.0)	10 (14.3)	1 (12.5)	11 (9.6)
9	유치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0 (0.0)	1 (4.0)	1 (1.4)	0 (0.0)	2 (1.8)
10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0 (0.0)	1 (4.0)	6 (8.6)	0 (0.0)	7 (6.1)
11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	-	-	-	-	-
12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1 (9.1)	0 (0.0)	9 (12.9)	0 (0.0)	10 (8.8)
13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우선적 행·재정적 지원 가능	0 (0.0)	1 (4.0)	0 (0.0)	0 (0.0)	1 (0.9)
14	지방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 위해 교원/시설·설비 확보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	-	-	-
15	인구감소지역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해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	-	-	-	-	-
16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 수립	0 (0.0)	1 (4.0)	1 (1.4)	0 (0.0)	2 (1.8)
17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1 (9.1)	0 (0.0)	11 (15.7)	0 (0.0)	12 (10.5)
활용 지자체 수		2 (18.2)	5 (20.0)	39 (55.7)	1 (12.5)	47 (41.2)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교육 분야 특례의 연계 사업화는 유치원·학교 교육경비 보조(8),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10), 농어촌 유학(17)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3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교육)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6	유·초·중·고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충남보령시	• 대응 투자사업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 불구, 유치원/학교의 교육경비 보조 가능	경남함안군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경남합천군	• 지방소멸지역 교육지원
		대구남구	• 대구광역시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 유치원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 찾아가는 문화공연
		인천강화군	• 강화교육발전특구 연계 '26년 강화군 교육경비 지원
		인천옹진군	• 옹진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전남곡성군	• 학교교육지원사업
		전북고창군	• 고등학교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
			• 글로벌 역사문화체험 연수
			•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교과)
			•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초등학생 기초수영교실
			• 특성화고 특화교육 지원
			• 학교체육시설 운영 지원
		전북장수군	•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9	유치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충남보령시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학습교구재비 지원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10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경남거창군	• 2026년 거창군 하브루타 교육 운영
		경남함안군	• 명품교육성 등 8개 사업
		인천옹진군	• 옹진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전남곡성군	• 곡성형 1인 성장 교육과정 운영 • 교육발전특구 지역특화 유보통합 지원 프로그램 • 늘봄학교운영 • 방과후과정 특색유치원 • 방과후학원운영 •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화사업 • 「공립유치원방과후과정선택프로그램 • 유치원돌봄교실운영
		전남함평군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함평 글로벌 교육센터 운영 지원 • 함평영재교육원 센터 운영 지원
		전북고창군	• 교육협력지구 꿈트리 동아리 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 • 초등방과후 영어학습 지원 • 코딩 교육 지원 •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충남보령시	• 고교 특기적성 동아리 지원
12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경기본청	•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경남거창군	•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업
		경남함안군	• 함안기술학교, 함안군평생교육원 30개 강좌
		경북영덕군	• 영덕지역돌봄학과 운영지원
		인천옹진군	• 옹진군 섬섬옥수 학습택배
		전남곡성군	•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성인,어린이,장애인)
		전남함평군	• 상하반기·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운영, 찾아가는 읍면별 마을평생학습 운영 등
		전북장수군	•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사업
13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우선적 행·재정적 지원 가능	전북남원시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16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 수립	전남곡성군	• 스마트팜전문인재양성
		전북남원시	• 전북대 남원글로벌컬캠퍼스 설립
17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천강화군	• 강화군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인천옹진군	•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전남보성군	•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해남군	• 농촌유학 경비 지원사업
			• 농촌유학 우수 학교 육성 지원사업
		전북고창군	•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전북본청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 •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
		전북장수군	• 농촌유학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 외 1개
		전북진안군	•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 의료/보건 분야

- 의료·보건 분야 4가지 특례는 29개 지자체에서 활용 중이고(25.4%), 필수의료 관련 의료기관 지정 및 가능(20) 특례의 활용도(10.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의료 분야 4개 특례 모두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 시책 수립·시행과 지역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 강화(19) 특례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표 3-14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의료·보건)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18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0 (0.0)	2 (8.0)	7 (10.0)	0 (0.0)	9 (7.9)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19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 시책 수립·시행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0 (0.0)	1 (4.0)	2 (2.9)	0 (0.0)	3 (2.6)
20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	1 (9.1)	3 (12.0)	8 (11.4)	0 (0.0)	12 (10.5)
21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0 (0.0)	1 (4.0)	4 (5.7)	0 (0.0)	5 (4.4)
활용 지자체 수		1 (9.1)	7 (28.0)	21 (30.0)	0 (0.0)	29 (25.4)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의료·보건 분야에서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는 4개 특례 모두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20)에 관한 특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18)에 관한 특례 역시 강원 정선 등 8개 지역에서 사업화가 진행

| 표 3-15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의료·보건)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18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강원정선군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재활)
		경남함안군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경북고령군	• 스마트건강마을조성사업(마을주치의사업)
		대구군위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북순창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충남보령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충남청양군	• 찾아가는 의료원
		충북단양군	• 재택치료센터 운영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19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 시책 수립·시행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경남함안군	• 보건지소 운영관리 •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전북정읍시	•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충북단양군	•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
20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	경기본청	•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지원 사업
		경남함안군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경북고령군	• 자체)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경북상주시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경북의성군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인천옹진군	•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
		전남영암군	•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전남장성군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전북김제시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
		충남예산군	• 예산군 필수의료지원 사업
21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거점의료기관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경북의성군	•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
		전남곡성군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운영지원
		전북정읍시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충북단양군	•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 주거·교통 분야

- 주거/교통 분야의 특례 14개는 총 72개(63.2%)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35) 관련 특례 활용 지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25),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32) 특례는 활용 중인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주거·교통)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22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1 (9.1)	0 (0.0)	1 (1.4)	0 (0.0)	2 (1.8)
23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1 (9.1)	2 (8.0)	5 (7.1)	0 (0.0)	8 (7.0)
24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	0 (0.0)	1 (4.0)	4 (5.7)	0 (0.0)	5 (4.4)
25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	-	-	-	-	-
26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 이용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	1 (9.1)	0 (0.0)	4 (5.7)	0 (0.0)	5 (4.4)
27	인구감소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0 (0.0)	1 (4.0)	7 (10.0)	1 (12.5)	9 (7.9)
28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1 (9.1)	3 (12.0)	5 (7.1)	0 (0.0)	9 (7.9)
29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0 (0.0)	1 (4.0)	5 (7.1)	1 (12.5)	7 (6.1)
30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내항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지원	0 (0.0)	0 (0.0)	1 (1.4)	0 (0.0)	1 (0.9)
31	도선 면허 발급·신고시 시설기준 완화	0 (0.0)	0 (0.0)	1 (1.4)	0 (0.0)	1 (0.9)
32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	-	-	-	-
3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1 (9.1)	2 (8.0)	3 (4.3)	0 (0.0)	6 (5.3)
34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0 (0.0)	2 (8.0)	2 (2.9)	1 (12.5)	5 (4.4)
35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세컨드홈)	0 (0.0)	3 (12.0)	11 (15.7)	0 (0.0)	14 (12.3)
활용 지자체 수		5 (45.5)	15 (60.0)	49 (70.0)	3 (37.5)	72 (63.2)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주거·교통 분야의 특례 연계 사업화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27),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23)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 목적의 수도권 전입자에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24),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보수 우선 지원(25),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를 내항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지원(30), 도선 면허 발급·신고시 시설기준 완화(31),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32)의 경우 연계한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주거·교통)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22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전북본청	•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충남청양군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남양구룡지구 사업
23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경북고령군	• 공동주택(소규모) 관리비용 지원사업
		경북상주시	•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인천옹진군	•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전남고흥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전북남원시	•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전북본청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
26	섬 지역의 내항여객선 이용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가능	인천옹진군	• 옹진군 여객운임 지원사업
		전남고흥군	•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전남진도군	• 섬 주민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
		전북본청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지원사업
		충남태안군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27	인구감소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강원정선군	•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택시) 사업 • 저상버스 도입지원
		부산동구	•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인천옹진군	•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전남고흥군	• 100원 택시 지원 사업 • 수요응답형버스운영지원사업
		전남영광군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전남장성군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100원 택시)
		전북남원시	• 남원시 행복콜택시 • 도시형교통모델 사업 • 벽지노선 사업
28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강원홍천군	•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경북상주시	• 빈집철거지원사업
		인천강화군	• 강화군 빈집정비 지원 사업
		전북남원시	• 2026년 도시-농어촌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전북본청	• 빈집정비사업 • 빈집철거지원사업
		전북정읍시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충남청양군	• 농촌빈집정비사업
29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충남서천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지원 사업
3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전북남원시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북본청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4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부산서구	• 충무동새벽시장 통영골목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전북정읍시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야외공공근로자쉼터 설치/재활용선별장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
35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세컨드홈)	경기가평균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후 지원받는 세제혜택 안내

□ 문화·관광 분야

- 문화·관광 분야의 특례 10개는 31개 지자체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40) 관련 특례 활용 지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 특례는 모두 1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특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의 경우 해당 분야 분야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38),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41)의 경우 5개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8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문화·관광)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36	인구감소지역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0 (0.0)	0 (0.0)	2 (2.9)	0 (0.0)	2 (1.8)
37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학예사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0 (0.0)	0 (0.0)	1 (1.4)	0 (0.0)	1 (0.9)
38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0 (0.0)	0 (0.0)	5 (7.1)	0 (0.0)	5 (4.4)
39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0 (0.0)	1 (4.0)	3 (4.3)	0 (0.0)	4 (3.5)
40	문화·예술·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1 (9.1)	3 (12.0)	3 (4.3)	0 (0.0)	7 (6.1)
41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0 (0.0)	1 (4.0)	4 (5.7)	0 (0.0)	5 (4.4)
42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0 (0.0)	0 (0.0)	2 (2.9)	0 (0.0)	2 (1.8)
43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0 (0.0)	0 (0.0)	1 (1.4)	0 (0.0)	1 (0.9)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44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0 (0.0)	0 (0.0)	2 (2.9)	0 (0.0)	2 (1.8)
45	관광단지 지정 규모 완화 및 개발부담금 면제, 인구감소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조성	1 (9.1)	0 (0.0)	1 (1.4)	0 (0.0)	2 (1.8)
활용 지자체 수		2 (18.2)	5 (20.0)	24 (34.3)	0 (0.0)	31 (27.2)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특례와 연계되어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는 특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39), 문화·예술·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40), 관광단지 지정 규모 완화 및 개발부담금 면제, 인구감소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조성(45) 등 3개로 나타남

【 표 3-19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문화·관광)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39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인천강화군	• 군민화합콘서트, 지역예술인페스티벌, • 강화명소소규모문화공연
		인천옹진군	• 지역축제(주섬주섬음악회, 섬마을밴드 등)
		충남보령시	• 보령문화의전당 운영
40	문화·예술·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경북영천시	•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전남영암군	•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
		충남보령시	•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45	관광단지 지정 규모 완화 및 개발부담금 면제, 인구감소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조성	충남청양군	•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
			•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사업
			•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조성사업

□ 외국인 분야

- 외국인 분야의 특례 3개는 32개 지자체(28.1%)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특화비자(46) 관련 특례 활용 지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화비자(46) 관련 특례가 활용된 지자체 비율은 본청(63.6%), 군 지역(21.4%), 시 지역(16.0%), 구 지역(12.5%)로 나타남

【 표 3-20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외국인)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46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지역특화비자 등)	7 (63.6)	4 (16.0)	15 (21.4)	1 (12.5)	27 (23.7)
47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1 (9.1)	0 (0.0)	1 (1.4)	0 (0.0)	2 (1.8)
48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1 (9.1)	0 (0.0)	2 (2.9)	0 (0.0)	3 (2.6)
활용 지자체 수		9 (81.8)	4 (16.0)	18 (25.7)	1 (12.5)	32 (28.1)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외국인 분야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연계되어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는 특례는 지역특화비자(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21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외국인)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46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지역특화비자 등)	강원본청	• 외국인정책 지원 사업
		경남본청	•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
		경남함안군	• 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서 발급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경북성주군	• 외국인희망이음사업
		경북영덕군	•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
		경북의성군	• 외국인지역특화형비자희망이음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사업
			• 지역특화형비자가족정착지원
		대구군위군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구남구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구본청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부산본청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남강진군	• 26년 숙련기능인력 전남 추천 쿼터 배정 및 운영
		전북본청	•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 지역기반비자승급지원금지원사업
			• 지역특화형비자와국인근로자고용우수기업지원
		충남보령시	• 보령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충남 본청	• 비자 추천서 발급 지원사업
47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충남본청	• 충청남도 외국인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 內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지원”
48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접수제 우대	경북성주군	• 지역특화형비자사업

□ 산업·일자리 분야

- 산업·일자리 분야의 특례 6개는 26개(22.8%) 지자체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49) 관련 특례의 활용 지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53)에 관한 특례를 활용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22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산업·일자리 분야)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49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0 (0.0)	2 (8.0)	7 (10.0)	1 (12.5)	10 (8.8)
50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0 (0.0)	0 (0.0)	3 (4.3)	0 (0.0)	3 (2.6)
51	일자리 정보 제공, 컨설팅 등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	0 (0.0)	1 (4.0)	8 (11.4)	0 (0.0)	9 (7.9)
52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가능	0 (0.0)	0 (0.0)	2 (2.9)	0 (0.0)	2 (1.8)
53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	-	-	-	-
54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시설 운영기준 완화	1 (9.1)	0 (0.0)	1 (1.4)	0 (0.0)	2 (1.8)
활용 지자체 수		1 (9.1)	3 (12.0)	21 (30.0)	1 (12.5)	26 (22.8)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산업·일자리 분야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연계되어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일자리 정보 제공, 컨설팅 등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51) 특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23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산업·일자리)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49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강원양구군	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산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기반 디지털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금정 원스톱 기업지원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
		전남보성군	조성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충남보령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보령시 중소기업(제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충남청양군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51	일자리 정보 제공, 컨설팅 등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을 위해 지원 가능	강원정선군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
		경북상주시	청년창업지원, 청년주거지원, 청년및중년일자리지원
		대구군위군	군위청년문화카드 지원사업 추진
		인천강화군	일자리지원기능 강화(6.5백만원), 상생일자리사업(60백만원)
		인천옹진군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전남신안군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을 위한 여선구입 임대사업
		충남청양군	일자리정보센터운영중
		충북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청년지원 수당
52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가능	경북의성군	K-U시티인재양성및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54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시설 운영기준 완화	대구본청	새일센터 지정운영

□ 기타 분야

- 기타 분야의 특례 6개는 16개(14.0%) 지자체에서 활용 중이고,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가능(55) 특례를 활용한 지자체가 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에 관한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24 | 특례별 지자체 활용 현황(기타 분야)

구분	특례명	본청	기초			합계
			시	군	구	
55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가능	0 (0.0)	1 (4.0)	4 (5.7)	0 (0.0)	5 (4.4)
56	인구감소대응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협약 체결 가능	0 (0.0)	1 (4.0)	3 (4.3)	0 (0.0)	4 (3.5)
57	노후·유휴시설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 가능	0 (0.0)	0 (0.0)	4 (5.7)	0 (0.0)	4 (3.5)
58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0 (0.0)	0 (0.0)	1 (1.4)	0 (0.0)	1 (0.9)
59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	-	-	-	-
60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로 양여 허용	0 (0.0)	1 (4.0)	1 (1.4)	0 (0.0)	2 (1.8)
활용 지자체 수		0 (0.0)	3 (12.0)	13 (18.6)	0 (0.0)	16 (14.0)
조사대상 지자체 전체		11 (100.0)	25 (100.0)	70 (100.0)	8 (100.0)	114 (100.0)

주: 각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그 비율을 의미함

- 기타 분야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연계되어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협약 체결 가능에 관한 특례(56)에서 3건으로 나타남

| 표 3-25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연계사업 현황(기타 분야)

구분	특례명	지자체	사업명
56	인구감소대응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협약 체결 가능	대구군위군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위탁
		인천강화군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운영 업무협약
		충남보령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 지역 현장의 특례 활용 현황과 선도사례 확산의 필요성

□ 지역 현장의 높은 특례 활용도와 활용 범위의 제한성

- 전체 조사 대상 지자체의 64%가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지역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는 총 380건으로 나타나 특례 자체에 대한 현장 활용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현재 특례를 활용 중인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5개 이하의 특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가 소화하는 특례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유형별 선택적 활용 경향을 고려한 우수 모델 발굴의 필요성

-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를 단순히 획일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현안이나 인구학적, 지리적 특성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본청)은 외국인(29.7%), 시 지역은 주거/교통(40.7%), 군 지역은 교육(23.0%), 구 지역은 보육/돌봄(36.8%) 분야에 활용 사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지역별로 정책 수요와 활용 양상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일률적인 특례 확대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특례 이행을 위한 자치입법 성과와 내부 집행 지침의 고도화 과제

□ 특례 연계 사업의 높은 현장 적용 수준과 실질적 집행 성과

- 전체 380건의 특례 활용 사례 중에서 구체적인 연계 사업화가 추진된 건수는

252건(66.3%)으로 지자체당 평균 2.2개에 달하며, 이 중 실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은 240건으로 특례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 수준은 높은 편임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특례 제도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집행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양호한 조례 제정 수준과 상대적으로 지체된 내부 지침 수립

- 지역 현장에서 특례의 활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례는 190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조례를 미제정(14건)하거나 준비 중(8건)인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
- 다만, 특례의 실질적 집행과 부서 간 협업을 규정하는 내부 지침 수립이 필요한 사례(161건) 중 54건은 여전히 미수립(53건)되거나 마련 중(1건)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지체 현상을 나타냄
 - 결과적으로 자치법규라는 거시적 제도 틀은 갖추어졌으나, 이를 현장에서 움직이게 할 미시적 집행 지침의 정비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실무자 리스크 완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침 제도화의 필요성

- 명확한 제도적 기반 없이 특례 규제를 현장에 임의로 적용할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 담당자에게 행정적인 책임 리스크가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 특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현장에서 자치입법 정비와 행정 절차적 타당성을 완벽히 검증해 낸 선도 지자체의 자치입법 및 내부 집행 프로세스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지자체가 특례 활용 단계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확산 플랫폼을 마련하여 특례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례 확산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할 필요

3. 개별 특례의 활용도에 근거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

□ 개별 특례에 대한 활용도 분석 결과

- 특례별로 현장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등 9개 특례는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앙부처 계획 등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항 반영, 사업, 인가 등에 대한 기준 완화, 우대 등의 형태로 지자체 활용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례들도 존재함
 - 2024년 추가 발굴된 특례 중에서 살펴보면,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로 양여 허용, 한부모 가족보호시설 입소기준 등 각종 기준 완화 또는 기간 연장,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우대 또는 참여확대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26】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 특례 목록

구분		특례명
보육 돌봄	3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교육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 불구, 유치원/학교의 교육경비 보조 가능
	12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17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료	20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지원 가능
주거	35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
외국인	46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
산업	49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입주기업체 판로개척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 반면,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등 7개는 현장에서 활용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중에서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축산물 구매 취약지역에 대한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등 2개 특례는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특례에

해당하나,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교육 부문의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의 기로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구감소지역 내에 대학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농진청 연구장비 등의 사용료 면제,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등의 특례는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특례에 해당하여 활용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이 활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특례의 경우, 각각의 특례에 대하여 법적인 규정 실익과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표 3-27] 지역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특례 목록

구분	특례명
교육	11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가능
	14 지방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 위해 교원·시설·설비 확보 등 필요한 지원 가능
	15 인구감소지역 지방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해 임용, 채용 등에 지원 강화
주거·교통	25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
	32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산업	53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기타	59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 특례 활용도의 원인에 관한 심층 분석 필요성

- 이번 장은 어떤 특례가 어느 분야와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나, 활용도가 엇갈리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구체적인 작동 기제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특례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역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개별 법령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인지, 까다로운 사전 요건이나 절차 때문인지 등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개별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특례로서 의미가 퇴색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행정적 추진체계 마련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면 지자체가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할 것임
- 반대로 활용도가 높은 특례에 대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킨 구체적인 선도 사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안착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제 4 장

특례 활용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인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제2절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소결

특례 활용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인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 제도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현장 안착 성과 및 저해 요인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파악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전반적인 현장 활용 수준에 관한 인식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지자체가 직면한 저해 요인 등을 파악함
 -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와 신규 특례에 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모색함

□ 조사 방법

- 조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11개 관할 시도, 그리고 11개 관할 시도에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서면조사 양식(한글 파일)을 배포·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 3장의 특례 활용 현황과 달리 본 장의 인식조사 대상은 지자체 단위가 아닌 특례 관련 공무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음
-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황 조사와 병행하여 '26.4.27(월)부터 '26.5.8.(금)까지 2주에 걸쳐 E-mail을 활용한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음
 - 일부 지자체 요청에 따라 '26.5.11.(월)~'26.5.15.(금) 1주일 동안 추가 보완 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 내용

- 조사 문항은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향, 특례의 기여 수준, 특례의 활용 수준 및 행정 추진체계, 저해요인 및 건의사항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전략 분야는 지자체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 분야 및 정책 우선순위 파악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기여 수준은 특례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 측면에 미친 영향과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영역을 조사
 - 지자체의 특례 활용 수준에서는 지자체의 특례의 활용 단계, 실행 및 고도화 단계에서의 우수 사업, 부서 간 협업 구조, 전담 인력 지정 등 특례 활용을 뒷받침하는 행정 프로세스 정비 수준을 조사
 - 특례의 현장 안착 저해요인 및 건의사항에서는 특례 활용을 가로막는 행정 병목 요인 분석 및 신규 특례 수요 및 건의사항을 조사

표 4-1 | 인구감소지역 특례 담당자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과 성과·저해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의 근거 마련	-
조사대상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및 11개 관할 시·도 11개 시·도 내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 관련 인구정책 및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조사기간	• 본조사: '26.4.27(월) ~ '26.5.8.(금) / 2주간 • 추가조사: '26.5.11(월) ~ '26.5.15.(금) / 1주간	
조사방법	E-Mail을 활용한 서면조사	행안부 협조/ 구조화된 조사지 활용

2. 응답자 현황

□ 전체 응답자 현황

- 전체 응답자는 127명으로 광역 차원에서 11개 시·도 모두 응답이 회수되었고, 시·도별 2~23개 특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지역 및 소속 구분별

○ 시·도별 분포 특성

- 전북(23명, 18.1%), 경북(22명, 17.3%), 전남(18명, 14.2%), 충남(16명, 12.6%), 경남(13명, 10.2%), 강원(12명, 9.4%)
- 충북(7명, 5.5%), 부산(6명, 4.7%), 대구(5명, 3.9%), 인천(3명, 2.4%), 경기(2명, 1.6%) 순으로 응답자가 분포함

○ 소속 부서별 분포 특성

- 인구정책 담당부서 92명(72.4%), 사업부서 등 기타(24명, 18.9%), 기획부서(11명, 8.7%) 순으로 분포함

【표 4-2】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지자체 인식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빈도	비중
시도별	강원	12	9.4
	경기	2	1.6
	경남	13	10.2
	경북	22	17.3
	대구	5	3.9
	부산	6	4.7
	인천	3	2.4
	전남	18	14.2
	전북	23	18.1
	충남	16	12.6
	충북	7	5.5
소속 구분별	인구대응 부서	92	72.4
	기획부서	11	8.7
	기타 사업부서 등	24	18.9
합계		127	100.0

주: 지역의 유형 구분 항목은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제2절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의 전략 분야

□ 지역별 응답 결과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집중하는 분야는 관광/생활인구(41.7%), 주택/주거안정(19.7%), 산업/일자리(19.7%)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본청 응답자(14명)는 관광/생활인구(35.7%)와 산업/일자리(28.6%)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초지자체 대비 주택/주거안정(7.1%)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 단위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반면, 군 단위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집중 전략 분야로 응답함
 - 시 단위(29명) 지역의 응답은 관광/생활인구(48.3%)와 산업/일자리(37.9%)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택/주거안정 분야는 3.4%(1명)에 불과
 - 군 단위(77명)는 관광/생활인구(41.6%)에 이어 주택/주거안정(28.6%)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농어촌 특유의 노후 주택 문제 및 청년 유입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이 핵심 현안임을 시사함
 - 구 단위(7명)는 관광/생활인구, 산업/일자리(각 28.6%)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주거안정·교통여건개선·보육/교육(각 14.3%)도 고르게 나타나 대도시 내 원도심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도시 문제 해결 수요가 확인됨

□ 소속 구분별 응답 결과

- 전담 부서(인구대응)는 종합적인 3대 축(관광·주거·일자리)을 중시하는 반면, 기획 및 사업 부서는 부서 특성에 따라 교육 및 SOC 등 세부 인프라를 강조함
 - 인구대응 부서(92명)는 관광/생활인구(41.3%), 주택/주거안정(23.9%), 산업/일자리(22.8%)를 주요 전략으로 인식함

- 기획부서(11명)는 관광/생활인구(36.4%) 다음으로 보육/교육(27.3%)을 높게 평가하여, 인적 자본 투자 및 지역 교육 생태계 육성을 중시하고 있음
- 사업부서 등(24명)은 관광/생활인구(45.8%)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보건(12.5%), 산업/일자리(12.5%), 교통여건 개선(8.3%)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기반 시설(SOC) 및 생활 편의성 개선에 대한 전략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남

| 표 4-3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집중하는 전략 분야(1순위)

구분		분야								합계	
		주택/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체육	관광/ 생활인구	산업/ 일자리	기타		
지역	본청		1 (7.1)	1 (7.1)	1 (7.1)	0 (0.0)	0 (0.0)	5 (35.7)	4 (28.6)	2 (14.3)	14 (100.0)
	기초 (지역 구분)	시	1 (3.4)	0 (0.0)	1 (3.4)	2 (6.9)	0 (0.0)	14 (48.3)	11 (37.9)	0 (0.0)	29 (100.0)
		군	22 (28.6)	3 (3.9)	7 (9.1)	1 (1.3)	3 (3.9)	32 (41.6)	8 (10.4)	1 (1.3)	77 (100.0)
		구	1 (14.3)	1 (14.3)	1 (14.3)	0 (0.0)	0 (0.0)	2 (28.6)	2 (28.6)	0 (0.0)	7 (100.0)
	기초소계		24 (21.2)	4 (3.5)	9 (8.0)	3 (2.7)	3 (2.7)	48 (42.5)	21 (18.6)	1 (0.9)	113 (100.0)
	소속 구분	인구대응 부서		22 (23.9)	3 (3.3)	6 (6.5)	0 (0.0)	1 (1.1)	38 (41.3)	21 (22.8)	1 (1.1)
기획부서		1 (9.1)	0 (0.0)	3 (27.3)	0 (0.0)	0 (0.0)	4 (36.4)	1 (9.1)	2 (18.2)	11 (100.0)	
사업부서 등		2 (8.3)	2 (8.3)	1 (4.2)	3 (12.5)	2 (8.3)	11 (45.8)	3 (12.5)	0 (0.0)	24 (100.0)	
합계			25 (19.7)	5 (3.9)	10 (7.9)	3 (2.4)	3 (2.4)	53 (41.7)	25 (19.7)	3 (2.4)	127 (100.0)

주: 지역의 유형 구분 항목은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2.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기여도

1)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 측면

□ 지역별

- 특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 기여도에 대하여 본청 응답자(14명)는 평점 3.79로 전체 평균(3.39) 및 기초소계(3.35) 대비 현행 특례 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본청의 경우 ② 대체로 도움 됨(50.0%)에 집중되어 있으며, ① 매우 도움 됨(14.3%)을 포함한 긍정 평가 비율이 64.3%에 달함
 - 기초지자체와 달리 ④ 별로 도움 안 됨 및 ⑤ 전혀 도움 안 됨 응답이 없어 광역 단위에서는 현행 특례가 지역 활력 도모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함
- 시·군·구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시’ 단위에서 특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타 행정구역 대비 두드러짐
 - 시 단위(29명)는 응답 평균이 3.28로 가장 낮으며, ④ 별로 도움 안 됨(27.6%) 비중이 타 행정구역(군 13.0%, 구 0.0%) 대비 높게 나타나, 현행 특례가 시 규모에서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
 - 군 단위(77명)는 ③ 보통 수준(46.8%)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구분별

- 현장에서 인구 정책을 직접 전담하는 부서일수록 기존 특례 제도의 효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함
 - 인구대응 부서(92명)의 평균은 3.27으로 전체 부서 중 가장 낮으며, ③ 보통 수준(46.7%) 위주의 유보적 시각과 ④ 별로 도움 안 됨(16.3%)의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특례 효과에 대한 한계 인식이 엿보임
 - 반면 기획부서(11명)는 평균 3.73으로 부정 평가(④ 별로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가 전무하며, 사업부서 등 기타(24명) 역시 평균 3.71로 ① 매우 도움 됨(25.0%)의 높은 긍정 응답을 보여 전담 부서와의 차이가 확인됨

| 표 4-4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에 기여 정도

구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 기여 수준					합계	평점
		매우 도움 됨	대체로 도움 됨	보통 수준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지역	본청	2 (14.3)	7 (50.0)	5 (35.7)	0 (0.0)	0 (0.0)	14 (100.0)	3.79
	기초	시	3 (10.3)	10 (34.5)	8 (27.6)	0 (0.0)	29 (100.0)	3.28
		군	7 (9.1)	24 (31.2)	36 (46.8)	10 (13.0)	77 (100.0)	3.36
		구	1 (14.3)	1 (14.3)	5 (71.4)	0 (0.0)	7 (100.0)	3.43
		기초소계	11 (9.7)	35 (31.0)	49 (43.4)	18 (15.9)	113 (100.0)	3.35
소속 구분	인구대응 부서	6 (6.5)	28 (30.4)	43 (46.7)	15 (16.3)	0 (0.0)	92 (100.0)	3.27
	기획부서	1 (9.1)	6 (54.5)	4 (36.4)	0 (0.0)	0 (0.0)	11 (100.0)	3.73
	사업부서 등 기타	6 (25.0)	8 (33.3)	7 (29.2)	3 (12.5)	0 (0.0)	24 (100.0)	3.71
합계		13 (10.2)	42 (33.1)	54 (42.5)	18 (14.2)	0 (0.0)	127 (100.0)	3.39

주1) 지역의 유형 구분 항목은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주2) 평점은 전혀 도움 안됨(1점)~매우 도움됨(5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것임

주3) 무응답은 평점 산출에서 제외

2) 지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 지역별

○ 본청 응답자(14명)는 특례의 기여 부분으로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정책 자율성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 ③ 규제 완화(35.7%)와 ④ 정책 추진 동력(21.4%) 응답의 합이 57.1%로, 제도적 기반 개선을 주요 기여 요인으로 평가함
- 반면, ① 재원 확보(14.3%)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으며, ② 정주 인프라 확충(21.4%)도 정책 추진 동력과 동일한 비중을 보여 물리적 기반 조성 역시 일정 부분 기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시·군·구 비교에서는 모든 행정구역에서 규제 완화를 1순위 기여 요인으로 꼽았으나, 2위 응답에서 시와 군의 정책적 수요 차이가 확인됨
 - 시 단위(29명)는 ③ 규제 완화(31.0%) 다음으로 ② 정주 인프라 확충(24.1%) 비중이 높아, 특례를 통한 지역 내 생활 기반 조성을 주요 효과로 체감
 - 반면 군 단위(77명)는 ③ 규제 완화(39.0%)에 이어 ① 재원 확보(24.7%)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부담 완화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구 단위(7명)는 ③ 규제 완화(42.9%)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구분별

- 소속 구분별 비교에서 전담 부서는 행정적 유연성을, 기획 및 사업 부서는 재원과 인프라 확충을 특례의 핵심 기여 요인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
 - 인구대응 부서(92명)는 ③ 규제 완화(46.7%) 응답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 특례를 통한 행정적 제약 완화를 체감함
 - 기획부서(11명)는 예산 및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 특성을 반영하듯 ① 재원 확보(54.5%) 비중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부서 등 기타(24명)는 ① 재원 확보(33.3%)와 ② 정주 인프라 확충(25.0%) 비중이 높게 나타나, 실무 현장에서 직접 체감 가능한 예산 및 시설 기반 확충을 특례의 주된 기여 부분으로 평가함

【표 4-5】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지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구분			지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합계
			재원/ 예산 확보	정주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행정 간소화	정책추진 동력 /자율성	기타	
지역	본청		2 (14.3)	3 (21.4)	5 (35.7)	3 (21.4)	0 (0.0)	14 (100.0)
	기초	시	5 (17.2)	7 (24.1)	9 (31.0)	5 (17.2)	2 (6.9)	29 (100.0)
		군	19 (24.7)	9 (11.7)	30 (39.0)	11 (14.3)	5 (6.5)	77 (100.0)

구분			지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합계
			재원/ 예산 확보	정주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행정 간소화	정책추진 동력 /자율성	기타	무응답	
	구		1 (14.3)	1 (14.3)	3 (42.9)	1 (14.3)	1 (14.3)	0 (0.0)	7 (100.0)
	소계		25 (22.1)	17 (15.0)	42 (37.2)	17 (15.0)	8 (7.1)	4 (3.5)	113 (100.0)
소속 구분	인구대응 부서		13 (14.1)	13 (14.1)	43 (46.7)	13 (14.1)	6 (6.5)	4 (4.3)	92 (100.0)
	기획부서		6 (54.5)	1 (9.1)	1 (9.1)	3 (27.3)	0 (0.0)	0 (0.0)	11 (100.0)
	사업부서 등 기타		8 (33.3)	6 (25.0)	3 (12.5)	4 (16.7)	2 (8.3)	1 (4.2)	24 (100.0)
	합계		27 (21.3)	20 (15.7)	47 (37.0)	20 (15.7)	8 (6.3)	5 (3.9)	127 (100.0)

주1) 지역의 유형 구분 항목은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3. 지자체의 특례의 활용 수준

1) 특례의 활용 단계¹⁾

□ 지역별

○ 본청 응답자(14명)의 응답 평균은 2.57로 기초소계(2.34) 대비 상대적으로 특례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③ 기반 구축(42.9%)과 ④ 기초 검토(50.0%) 응답이 주를 차지하여, 광역 단위에서는 특례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침 마련 등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함

1) 인식조사에서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의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미인지/미검토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② 기초 검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부서별로 검토하거나 선별하는 단계
③ 제도화 준비	조례 제정, 시행 지침 마련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 중인 단계
④ 실행/안착	실제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례를 적용하여 집행 중인 단계
⑤ 고도화	기존 특례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신규 특례 발굴을 병행하는 단계

- 실제 예산을 수반하는 ② 실행/안착(7.1%) 비율은 낮아, 아직 사업 집행보다는 제도적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군·구 비교에서 군 단위는 기초 검토에 집중하는 반면, 시 단위는 내부 검토조차 착수하지 못한 비율이 타 행정구역 대비 높음
 - 군 단위(77명)는 ④ 기초 검토(63.6%)에 응답이 집중되어,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특례 적용의 기초적인 수요 파악에 머무르고 있음
 - 시 단위(29명)는 평균 2.24로 특례 활용 수준이 낮고, 특히 ⑤ 미검토(20.7%) 비중이 군(5.2%)이나 구(14.3%) 대비 확연히 높게 나타남

□ 소속 구분별

- 실질적인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인구대응 부서는 활용 수준을 낮게 평가한 반면, 기획 및 사업 부서는 상대적으로 활용 수준을 높게 평가함
 - 인구대응 부서(92명)는 평균 2.21로 활용 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했으며, ④ 기초 검토(60.9%)와 ⑤ 미검토(12.0%) 비중이 타 부서 대비 높게 나타남
 - 반면 기획부서(11명)는 평균 3.00으로 부서 중 활용 인식이 가장 높고, ③ 기반 구축(54.5%) 응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부서 등 기타(24명)의 평균은 2.67이며, ④ 기초 검토(50.0%)와 ③ 기반 구축(33.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표 4-6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단계 수준

구분			인구감소지역 적응 특례 활용 수준 단계					합계	평점
			고도화	실행/안착	기반 구축	기초 검토	미검토		
지역	본청		0 (0.0)	1 (7.1)	6 (42.9)	7 (50.0)	0 (0.0)	14 (100.0)	2.57
	기초 (지정 구분)	인구감소	1 (0.9)	8 (7.4)	28 (25.9)	62 (57.4)	9 (8.3)	108 (100.0)	2.35
		관심지역	0 (0.0)	1 (20.0)	0 (0.0)	2 (40.0)	2 (40.0)	5 (100.0)	2.00

구분			인구감소지역 적응 특례 활용 수준 단계					합계	평점
			고도화	실행/ 안착	기반 구축	기초 검토	미검토		
	기초 (지역 구분)	시	0 (0.0)	2 (6.9)	9 (31.0)	12 (41.4)	6 (20.7)	29 (100.0)	2.24
		군	1 (1.3)	6 (7.8)	17 (22.1)	49 (63.6)	4 (5.2)	77 (100.0)	2.36
		구	0 (0.0)	1 (14.3)	2 (28.6)	3 (42.9)	1 (14.3)	7 (100.0)	2.43
	기초소계		1 (0.9)	9 (8.0)	28 (24.8)	64 (56.6)	11 (9.7)	113 (100.0)	2.34
소속 구분	인구대응 부서		0 (0.0)	5 (5.4)	20 (21.7)	56 (60.9)	11 (12.0)	92 (100.0)	2.21
	기획부서		1 (9.1)	1 (9.1)	6 (54.5)	3 (27.3)	0 (0.0)	11 (100.0)	3.00
	사업부서 등 기타		0 (0.0)	4 (16.7)	8 (33.3)	12 (50.0)	0 (0.0)	24 (100.0)	2.67
합계			1 (0.8)	10 (7.9)	34 (26.8)	71 (55.9)	11 (8.7)	127 (100.0)	2.36

주1) 지역의 유형 구분 항목은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주2) 평점은 미검토(1점)~고도화(5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것임

2)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특례 사례

□ 지역 맞춤형 복지·의료 및 교육 서비스의 구체화

- 전북 순창군의 ‘돌봄통합지원(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및 충북 본청의 ‘이동진료서비스’ 등 지역의 고령화 특성과 필수 의료 공백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특례가 실행 단계에 진입함
- 경북 영주시의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및 경북 영덕군의 ‘지역대학(대구 한의대) 연계 특화 학과 개설’ 등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위한 정책이 안착하고 있음

□ 조세 감면 및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정주 유인 강화

- 경북 안동시의 ‘법인세 감면 및 기업 세제 지원’, 부산 금정구의 ‘시군구 연고사업 및 원스톱 기업지원’ 등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 실행되고 있음
- 전북 고창군의 ‘결혼장려금 및 정착 지원금 지급’, 경남 남해군의 ‘수도권 이주자 대상 공유재산 수익매각·대부 조례 입법 완료’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직접적인 인구 유치를 도모하는 사례가 확인됨

□ 지자체 권한을 활용한 행정·재정 운용의 융통성 확보

- 전남 보성군의 ‘특별·보통교부세 신규 통계 발굴’, 충북 본청의 ‘재난관리기금 우선 지원’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특례 사례 확인
- 충남 태안군의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과 같이 섬 지역 등 공간적 제약이 큰 지자체의 경우 맞춤형 교통 인프라 지원이 실행되고 있음

【표 4-7】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특례 사례

구분	특례 내용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감면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경상북도 영주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경상북도 영덕군	• 평생교육사업 관련 대구한의대 협약을 통해 지역특화 학과 개설 • 지역특화비자 연계 희망이음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군구 연고사업, 원스톱 기업지원
전라남도 보성군	특별교부세 신규사업 및 보통교부세 신규 통계 발굴 등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돌봄통합지원(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급, 인구 정착 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충청북도 본청	이동진료서비스, 재난관리기금 우선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수도권 이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수익매각, 대부 특례 • 노후유희시설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한 조례 입법 완료

3) 추진체계 구축

□ 지역별

- 본청 응답(14명)은 ④ 담당자 지정(35.7%)과 ⑤ 분산/미지정(42.9%) 비중의 합이 78.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특성이 나타남
 - 일부 ② 전담 팀(TF) 운영(7.1%) 및 ③ 전담 인력 배치(7.1%) 비율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특례만을 전담 관리할 광역 단위의 독립적인 행정 여력은 부족한 상태로 분석됨
- 시·군·구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전담 인력 배치가 미흡한 가운데, 구 단위는 점임 담당자를 두는 반면 시·군 단위는 부서별 자체 처리에 크게 의존함
 - 시 단위(29명)와 군 단위(77명)는 공통적으로 ⑤ 분산/미지정 비중이 각각 58.6%,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구 단위(7명)는 ④ 담당자 지정(71.4%) 비중이 높아, 특례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를 보임

□ 소속 구분별

- 인구대응 부서는 전담 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면, 기획 부서와 사업부서 등 기타 부서는 상대적으로 조직화된 구조를 보임
 - 인구대응 부서(92명)는 ⑤ 분산/미지정(62.0%)과 ④ 담당자 지정(34.8%) 비중의 합이 96.8%로 나타남
 - 반면 기획부서(11명)는 ③ 전담 인력 배치(27.3%), ② 전담 팀(TF) 운영(18.2%), ① 민관 협력체계 구축(9.1%) 등 추진체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업부서 등 기타(24명)는 ④ 담당자 지정(33.3%)과 ⑤ 분산/미지정(33.3%), ③ 전담 인력 배치(25.0%) 순으로 나타남

표 4-8 | 특례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한 행정적 추진체계 구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위한 행정 추진체계						합계
		민관 협력체계	전담 팀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담당자 지정	분산/ 미지정	무응답	
지역	본청	0 (0.0)	1 (7.1)	1 (7.1)	5 (35.7)	6 (42.9)	1 (7.1)	14 (100.0)
	기초	0 (0.0)	3 (10.3)	2 (6.9)	7 (24.1)	17 (58.6)	0 (0.0)	29 (100.0)
		1 (1.3)	1 (1.3)	8 (10.4)	26 (33.8)	41 (53.2)	0 (0.0)	77 (100.0)
		0 (0.0)	0 (0.0)	0 (0.0)	5 (71.4)	2 (28.6)	0 (0.0)	7 (100.0)
		1 (0.9)	4 (3.5)	10 (8.8)	38 (33.6)	60 (53.1)	0 (0.0)	113 (100.0)
소속 구분	인구대응 부서	0 (0.0)	1 (1.1)	2 (2.2)	32 (34.8)	57 (62.0)	0 (0.0)	92 (100.0)
	기획부서	1 (9.1)	2 (18.2)	3 (27.3)	3 (27.3)	1 (9.1)	1 (9.1)	11 (100.0)
	사업부서 등 기타	0 (0.0)	2 (8.3)	6 (25.0)	8 (33.3)	8 (33.3)	0 (0.0)	24 (100.0)
합계		1 (0.8)	5 (3.9)	11 (8.7)	43 (33.9)	66 (52.0)	1 (0.8)	127 (100.0)

주1) 지역의 유형 구분 항목은 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4. 특례의 현장 안착 저해요인

□ 지역별

- 본청 응답자(14명)는 ② 현장 수요 불일치(28.6%)와 ⑤ 행정 절차 장벽(28.6%)을 주된 저해요인으로 인식함
 - 광역 단위에서 특례 적용을 지원할 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나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특례 내용 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 시·군·구 비교에서는 기존 지원망이 존재하는 시는 정책의 차별성을, 행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군은 제도적 기반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함
 - 시 단위(29명)는 ① 중복성/차별성 부재(41.4%) 비중이 높아, 기존에 지원받던 내용과 유사성으로 인해 특례만의 독립적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군 단위(77명)는 ③ 실행기반 마련 한계(28.6%)를 1위로 꼽아, 특례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행정 역량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구 단위(7명)는 ② 현장 수요 불일치(57.1%)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속 구분별

- 총괄 부서는 정책 방향성의 문제를, 기획 및 실행 부서는 적용 과정의 물리적·절차적 한계를 주요 장벽으로 인식함
 - 인구대응 부서(92명)는 ② 현장 수요 불일치(25.0%), ③ 실행기반 마련 한계(21.7%), ⑤ 행정 절차 장벽(21.7%) 등 다양한 사유가 혼재되어 나타남
 - 기획부서(11명)는 ⑤ 행정 절차 장벽(27.3%)을 가장 큰 요인으로 체감함
 - 사업부서 등 기타(24명)는 ① 중복성/차별성 부재(25.0%)에 이어 ③ 실행기반 마련 한계(20.8%)와 ④ 과도한 적용 요건(20.8%)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

- 구조적·법적 장벽 외에도 일선 현장의 행정 여건 및 제도 인지도 등 소프트웨어적 요인이 특례 안착의 장애물로 작용함
 -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현장 적용 사례 안내가 부족하여 실무진의 제도 활용이 저해되며, 조례 개정, 부처 협의 등 과도한 행정적 투입 대비 지역에 돌아오는 실제 체감 혜택이 미미하여 추진 동력이 저하됨
 - 특례 실행에 필수적인 타 사업 부서(건축, 세무 등)와의 협업 기반 부족 등 조직 내부 수용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

[표 4-9]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저해 요인

구분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현장 안착 저해 요인							합계	
		중복성/ 차별성 부재	현장수요 불일치	실행기반 마련 한 계	과도한 적용 요건	행정절차 장벽	기타	무응답		
지역	본청		1 (7.1)	4 (28.6)	2 (14.3)	1 (7.1)	4 (28.6)	1 (7.1)	1 (7.1)	14 (100.0)
	기초	시	12 (41.4)	4 (13.8)	2 (6.9)	2 (6.9)	6 (20.7)	2 (6.9)	1 (3.4)	29 (100.0)
		군	11 (14.3)	15 (19.5)	22 (28.6)	11 (14.3)	15 (19.5)	3 (3.9)	0 (0.0)	77 (100.0)
		구	1 (14.3)	4 (57.1)	1 (14.3)	0 (0.0)	1 (14.3)	0 (0.0)	0 (0.0)	7 (100.0)
		소계	24 (21.2)	23 (20.4)	25 (22.1)	13 (11.5)	22 (19.5)	5 (4.4)	1 (0.9)	113 (100.0)
	소속 구분	인구대응 부서		19 (20.7)	23 (25.0)	20 (21.7)	7 (7.6)	20 (21.7)	3 (3.3)	0 (0.0)
기획부서		0 (0.0)	2 (18.2)	2 (18.2)	2 (18.2)	3 (27.3)	1 (9.1)	1 (9.1)	11 (100.0)	
사업부서 등 기타		6 (25.0)	2 (8.3)	5 (20.8)	5 (20.8)	3 (12.5)	2 (8.3)	1 (4.2)	24 (100.0)	
합계			25 (19.7)	27 (21.3)	27 (21.3)	14 (11.0)	26 (20.5)	6 (4.7)	2 (1.6)	127 (100.0)

5. 신규 특례 제안 및 건의사항

□ 광역 단위

- 본청 응답자는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 부처 간 협조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특례 정보의 관리와 현장 적용의 괴리를 지적함
 - 기재부 등 타 부처에서 신규 발굴된 세제 혜택 등이 행안부 관리 자료에 적시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현장에 혼선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공식 자료의 통합 관리 및 현행화를 촉구

- 현행 특례의 다수가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등 현안이 반영된 특례 발굴을 건의
- 그 외에도 다가치 보육 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및 기자재 공유) 등 광역 단위 지원 사업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시 단위)

- 기존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 감면과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함
 - 폐역사 유희부지 활용(매매/임대 조건 완화) 및 미활용 폐교 재산 특례 등이 존재하나, 실제 소관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지적
 - 상업기업 특례 조항 신설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유치 시 국세 감면 등 구체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요구
 - “행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선언적 문구가 아닌,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요구

□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그룹으로, 주거·의료·교통 등 기초 인프라 개선부터 지방계약법 예외 적용 등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요구함
 - 세컨드홈, 지방 이전 기업 상속세 면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빈집 장기 임대 전환 시 재산세 감면 등 구체적 세제/재정 혜택을 건의
 - 지역 필수 의료인력(의사) 연계 시스템, 공무원 정원 기준 예외 적용, 인구 유입을 위한 광역 교통편(철도, 공항) 마련 등을 건의
 -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 예외 적용 등 타 부처 소관 규제의 실질적 완화를 요구
 - 특례 적용 우수사례 및 부처 협의의 가이드라인 제공, 사전 컨설팅 시스템 구축, 인구 부서로의 업무 편중 해소 및 전담 실행 조직 지원을 요구

| 표 4-10 | 신규 특례 제안 및 특례 관련 건의 사항

구분		내용
신규 특례제안	본청	• 다가치 보육 사업(어린이집 그룹별 프로그램 및 기자재 공유 사업)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시	• 폐역사 유희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철자 간소화(해당 지자체 대상 임대 또는 매매조건 완화) • 상업기업특례 조항 신설 •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 기업 유치시 국세 감면 특례
	군	• 인구감소지역에 임대주택 확대 도입(청년, 신혼, 근로자 등 수혜자 폭을 넓히고, 조건 완화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 지역필수의료 관련 의료인(의사) 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지방(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 위임 •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특례(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 •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외 1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세컨드홈) • 빈집 장기임대 전환특례(빈집 소유자가 5년이상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 임대시 재산세 감면, 수리비 지원 등) • 인구감소지역 중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무원 정원 특례 • 지역 의료인재 육성을 통한 의료 불균형 해소 • 인구감소지역 내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 및 공원 설치 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화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체 채용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소지 거주자(채용시 또는 일정기간) 가산점 부여 •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지방계약법」 상 지역민 고용 우수기업(70% 이상)에 대한 수의 내지 제한 입찰 신설(지역친화기업 육성필요)
	구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례
건의 사항	본청	• 현행 특례는 제도상 다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아 체감 효과와 실효성이 다소 미미한 측면이 있음 • 지역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신규 특례 발굴 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행안부 관리자료를 적시에 현행화하고, 지자체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 •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타 광역시·도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

구분		내용
시		• 특례 적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특례내용이 필요 • 소관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특례가 있으나, 실질적 적용이 어려움
군		• 중앙부처에서 기초지자체가 해당 특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필요 • 특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관련부서에서 오는 공문이 아니라 인구부서로 일괄로 특례가 내려와 해당업무가 인구부서 업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특례에 따른 제도적 기반구축이 어려움 • 인구감소지역 관련 보통교부세 신규 통계 반영 • 특례적용 우수사례집, 부처협의 사례등을 포함한 표준 활용 매뉴얼 제공이 필요함 • 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의 개별법 개정과 연계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군소 지자체로 관련 특례를 조례 및 사업에 활용 검토추진 인력이 부족하여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는 선언적 특례 법령보다 중앙기관 차원의 법령 또는 사업지침 개정 및 관련 사업양성 필요 • 신규 특례에 대해 기초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인구감소지역 기본 및 시행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속적으로 업무를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챙길 필요 • 통합적인 특례 적용보다는 개별적인 사업(사안)에 따라 맞춤형 사전 컨설팅 필요
구		• 특례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많은 데 개별 조례를 마련해야하는 어려움과 기존 관련 법령과의 법률검토 등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제3절

요약 및 소결

1. 특례 활용 수준 진단과 추진체계상의 한계

□ 지자체 특례 활용 수준과 지역·부서별 체감도 차이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특례 활용 정도는 특례 적용을 위한 ‘기초 검토’와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 ‘기반 구축’ 단계가 대부분을 차지함
 - 특례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검토한 바 없는 ‘미검토’ 응답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담당자의 특례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검토하거나 선별하는 ‘기초 검토’와 ‘기반 구축’ 등 도입 초기 단계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례의 활용 수준은 광역이 기초에 비해, 자치구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가 인구정책 담당 부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유형과 부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특례 활용 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담당 부서가 기획부서나 사업 실무부서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남

□ 특례 활용을 위한 지자체 내 추진체계 구축 정도

- 특례 이행을 위한 지자체 추진체계 구축 현황으로 ‘분산 또는 미지정’이 과반을 차지하나, ‘담당자 지정’, ‘전담인력 배치’, ‘전담 팀 운영’ 등 전향적인 체계 구축 역시 40% 이상을 차지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과도기적 모습도 나타남
 - 광역(본청)이 기초지자체보다, 시·군 지역보다는 자치구 지역에서 전담 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정비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도 나타나고 있음
- 부서별로 살펴보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과반이 특례 적용에 관한 추진체계가 분산되거나 미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사업부서나 기획부서에 비해 인구감소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추진체계 구축 정도가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특례 활용 역량 강화와 추진체계 정비 필요

- 인구정책을 총괄해야 할 인구감소 대응 주무부서의 특례 활용 수준과 추진체계 구축 정도가 사업부서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가로막는 병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특례가 양적으로 지속해서 확대되더라도, 이를 일선 현장에 전파할 주무부서의 관리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례의 실질적 적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실무 사업부서는 개별법과 부처 지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주무부서가 신규 특례를 발굴하여 명확히 매칭해 주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인구정책 주무부서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나 개별 특례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술적 요소에는 취약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특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특례에 대한 이해도와 동력이 초기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 다만, 전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군 단위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조직 신설을 강제하기보다는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안적 체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특례의 기여도 인식 차이와 정책 수요의 다변화

□ 특례의 전반적인 기여도 체감과 주체별 인식의 차이

-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도모라는 법적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보통’에서 ‘대체로 도움 됨’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남

- 특례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광역이 기초보다 높았고, 자치구가 시 지역 또는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
- 부서별로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행위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사업부서의 기여도 인식 수준이 기획 또는 인구감소 대응 부서에 비해 높은 편임

□ 지역 유형 및 소속 부서별 특례 기여 영역에 대한 시각차

- 특례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영역은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 ‘재원 및 예산 확보’, ‘정책 추진 동력과 자율성 확보’ 및 ‘정주 인프라 확충’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 유형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를 가장 큰 기여 영역으로 인식하였으나, 군 지역은 ‘재원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응답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속 부서별로는 인구감소 대응 부서는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를 가장 중요한 기여 영역으로 평가한 반면, 기획부서와 사업부서 등은 ‘재원 및 예산 확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특례에 기대하는 역할이 부서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 저해요인을 극복한 선도사례 발굴과 지역 맞춤형 성공 모델의 전국 확산

- 지자체 유형이나 소속 부서에 따라 특례의 효용성이 편차를 보인다는 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현장의 정책 수요가 매우 다원화되어 있고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개별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사업부서에 비해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기여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상은, 특례를 활용해 도출한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성과나 규제 해소의 효용이 지자체 전반의 거시적인 인구 활력 정책 기획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특례의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부서별로 다원화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의 유연성을 넓혀주는 방향성이 요구됨
- 현장에는 여러 제도적 저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극복하여 이미 실행 및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우수 선도사례가 상당수 파악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경북의 ‘지역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지역특화 학과 개설’,

전북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 충남의 ‘도서민 여객선 등 교통서비스 지원’ 등은 현장의 높은 장벽을 뚫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낸 대표적인 모델들에 해당함

- 특례 제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도사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축적된 우수 성과들을 종합적인 지역 활력 모델로 연계·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타 지자체들이 시행착오 없이 특례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 제도의 본연의 효과와 현장 체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

3. 현장 안착 저해요인으로서 지역 현장 수요와의 불일치

□ 특례의 지역 현장 안착 저해요인으로서 현장 수요 불일치 문제

- 인식조사 결과, 특히 특례의 현장 안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중에서 ‘현장 수요 불일치’에 대한 응답 비중은 ‘실행기반 마련 한계’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현행 특례가 일반적인 지방자치 단체와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인구감소지역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의 확대 필요

- 특례의 현장 수요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지닌 급격한 구조적인 취약성 및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 지자체를 기준으로 설계된 법제도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특례화하는 것이 필요
-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일선 현장의 한계에 대하여 법률적인 예외 조항(특례)을 적용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제 5 장

사례 연구를 통한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및 사례 선정

제2절 경북 본청·영덕군

제3절 경남 남해군

제4절 요약 및 소결

사례 연구를 통한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및 사례 선정

1. 분석 개요

□ 분석 배경 및 목적

- 앞선 분석에서 지자체의 60% 이상이 특례를 활용하고 있고, 특례를 활용한 300건 이상의 사례를 파악하였으나, 특례의 활용 수준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 수준과 추진체계 구축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만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특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동력이 무엇인지, 반대로 특례가 왜 특정 지역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등 현장 안착의 내실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례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바꾸는 무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장 안착 우수사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제 특례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안착의 성공요인이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방법 및 내용

- 3장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현황 분석 시 조사된 지자체 활용 특례 및 사례에 대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
 - 심층 인터뷰와 함께 지자체가 실제 발의·제정한 특례 관련 조례안, 내부 방침 문서, 세부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 내역서 등 행정 내부 자료를 교차 분석함

- 분석 내용은 크게 사례 지자체의 특례 활용 현황과 특성, 특례 활용의 내실성 분석 등 2가지로 구성됨
 - 내실성 분석은 분석 틀에 따라 지역수요 부합성, 행·재정적 실행기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법·제도적 적용 환경 등 4가지 영역에서 분석

【표 5-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내실성 분석 개요

구분	내용	합계
분석 목적	• 특례 제도의 현장 작동 기제와 실제 집행의 내실성 심층 진단 • 특례의 현장 안착 성공요인과 미활용 특례의 장애요인 분석 • 향후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실증적 근거 마련	3-4장 분석 결과 연계
분석 방법	지자체 담당자 심층인터뷰 및 문헌조사 병행	
분석 내용	• 사례 지자체 및 특례의 현장 적용 현황과 활용 특성 • 사례 지자체 및 특례의 현장 활용 내실성 분석 - 지역수요 부합성, 행·재정적 실행기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법·제도적 적용 환경	
분석 대상	특례 활용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개별 특례 단위에서 분석	-

□ 분석 틀

- 분석 틀은 ① 지역 수요 부합성, ② 행·재정적 실행 기반, ③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④ 법·제도적 적용 환경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었음
- 지역수요 부합성은 특례의 현장 적합성 측면에서 특례의 수혜 대상과 연계 사업의 내용이 해당 지역의 인구 여건과 현안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함
 - 지자체가 특례를 활용해 유효 정책 수요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증적인 성과 창출 정도를 진단함
- 행·재정적 실행 기반은 특례를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활용 및 안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한 조례·지침 등 제도적 자치법규 인프라와 전담 조직, 실무 인력 및 예산 투입의 수준을 검토함
 - 특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지침, 지자체의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과 인력, 인센티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검토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특례 이행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의 부서 간, 외부 유관 주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수준을 검토
 - 특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총괄 부서와 행위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사업 부서간, 기초-광역-대학-기업 등 외부 주체들과의 협력 구조를 파악
- 법·제도적 적용 환경은 특례의 집행을 둘러싼 상위법령·타 부처 지침과의 충돌 요인이나 숨겨진 행정적 진입 장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
 - 특례 활용을 둘러싼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특례에 대한 환류 요소를 파악함

표 5-2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내실성 분석 틀

구분	내용	질문 리스트	비고
지역 수요 부합성	- 해당 특례가 지역의 수요(주거·일자리·교육 등)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 특례 및 연계 사업의 주된 타겟층(수요자)은 누구이고, 지역의 인구문제 측면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 - 특례를 통해 실제 지역에 발생한 효과는 무엇인가?	- 해당 특례 또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 해당 특례 또는 연계 사업의 주된 타겟층은 누구이고, 지역 인구문제해결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 특례 및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인구 유입, 인력양성, 민자유치 등)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 및 적용
행·재정적 실행 기반	- 특례 활용을 위해 조례나 실무 지침,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였는가? - 특례 활용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 특례와 연계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 특례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나 지침/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누가/어떻게 마련하였는가? - 특례 활용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 담당자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있는가? - 특례 연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조례·지침, 인력, 재원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실무자의 특례 체감도·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내 협력체계(총괄-사업부서) - 대학 등 지역 내 유관기관 등 민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수준	- 특례 현장 적용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구대응부서와 사업부서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특례 활용과 관련한 외부 주체(광역, 대학, 전담기관 등)는 누구이며, 협력 구조는 어떠한가?	총괄부서 이해도/전문성 향상, 거버넌스 정비
법·제도적 적용 환경	- 개별 근거 법령·부처 지침과의 충돌로 인한 사문화 요소, 행정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가? - 이러한 진입장벽 요소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 특례 적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지침과의 충돌이나 사문화 요소 또는 행정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가? - 이러한 진입장벽을 어떻게 모니터링 및 대응하고 있는가?	사문화 특례 개선 및 우수 특례 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2. 사례 선정

□ 고도화 또는 안착 단계에 해당하는 특례 사례 선정

- 인식조사에서 특례 활용 수준이 고도화 또는 실행 및 안착 단계²⁾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전남 보성군,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덕군, 성주군, 부산 금정구 (관심), 전북 순창군, 고창군, 충남 본청, 태안군 등임
-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주요 특례 활용 사례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거나 현행 법체계상의 한계를 극복 하여 성과 확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선별하였음
 - 경북 영덕군의 지역특화비자³⁾, 경남 남해군의 수도권 이주자 공유재산 매각 및 노후·유희시설 활용범위 확대 사례에 초점을 두고자 함

【표 5-3】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특례 사례 조사 결과

구분	특례 내용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감면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경상북도 영주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경상북도 영덕군	• 평생교육사업 관련 대구한의대 협약을 통해 지역특화 학과 개설 • 지역특화비자 연계 희망이음사업(광역 사업 해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군구 연고사업, 원스톱 기업지원
전라남도 보성군	특별교부세 신규사업 및 보통교부세 신규 통계 발굴 등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돌봄통합지원(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급, 인구 정착 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충청북도 본청	이동진료서비스, 재난관리기금 우선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수도권 이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수익매각, 대부 특례 • 노후유희시설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한 조례 입법 완료

2) 인식조사에서 특례의 현장 안착 수준의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미인지/미검토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② 기초 검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부서별로 검토하거나 선별하는 단계
③ 제도화 준비	조례 제정, 시행 지침 마련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 중인 단계
④ 실행/안착	실제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례를 적용하여 집행 중인 단계
⑤ 고도화	기존 특례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신규 특례 발굴을 병행하는 단계

3) 해당 사업은 광역-기초 협력사업에 해당하므로 경북 본청·영덕군 사례로 분석하였음

제2절

경북 본청·영덕군

1. 사례 개요

- 경북 본청은 시·군과 협력하여 영주·장기체류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특례와 연계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의 장기 정착을 돕는 “지역기반 비자 희망이음사업”을 '24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특례와 연계하여 2024년 지역특화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고, 2025년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음
-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특례 등을 통해 유입된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취업, 복지 등 전반적인 생활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특례와 시군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표 5-4 | 경북 본청·영덕군의 지역특화비자 연계 희망이음사업 개요

구분	내용
특례내용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가능
추진 근거	•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영덕군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연계 사업명	지역특화비자 희망이음사업('26년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으로 변경)
사업비	115백만원 (영덕군 기준)
추진기간	2024~2026
담당부서	경상북도 외국인정책과 (영덕군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

주: 특례 활용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2. 특례의 현장 안착 내실성 분석

□ 지역수요 부합성

- 해당 사업은 지역의 단기체류 중심의 외국인을 장기 정착형으로 전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인구 과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수요 부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영덕군의 경우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대부분이 단순근로(E-9) 및 선원(F-19) 등 단기 체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장기 정착형 체류자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인구 과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고 있음
- 지역우수인재(F-2-R) 및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근로자와 동반가족을 수요자로 설정하여, 단순 노동력 확보를 넘어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화를 도모
 - 경북 본청은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2023년 290명의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690명의 추천서를 발급(경상북도 보도자료)
 - 영덕군은 해당 사업으로 '25년 기준 비자 변경 추천이 25명이 이루어졌고, 동반가족 초청은 6명(배우자 3, 자녀 3)이 이루어지는 등 성과 나타남
 - 지역우수인재(F-2-R) 전환은 '24년 3명, '25년 5명, 숙련기능인력(E-7-4-R)은 '25년 17명에 이르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비자 전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관내 식당, 카페, 수산물 가공공장, 농장, 선원 등 다양한 분야에 안착하고 있음
 - 또한 '26년 6월 기준, 총 11명의 동반가족이 초청(배우자 6명, 관내 자녀 출생 3명, 미성년 자녀 2명)

【표 5-5】 경상북도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지역우수인재	290	386	107	783
외국국적동포	-	116	97	213
숙련기능인력	-	-	486	486
합계	290	502	690	1,482

주: 경북도청 보도자료(2025.10.23.),

| 표 5-6 | 경북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 현황(2025.12.30. 기준)

구분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 (E-7-4/E-7-4R)	
		배정인원	추천인원			배정인원	추천인원 (지역특화)
			합계	K-point	지역특화		
관심 지역	경주시	경북도 배정인원 통합 운영 (시군당 최대 80명 제한, 경주·영천시는 130명 제한)	109	6	103	-	-
	김천시		48		48	-	-
인구 감소 지역	안동시		24		24	120	26
	영주시		43		43	120	48
	영천시		103	7	96	144	39
	상주시		17		17	100	5
	문경시		22		22	40	2
	의성군		24	1	23	20	3
	청송군		0		0	10	0
	영양군		5		5	9	0
	영덕군		18	1	17	20	5
	청도군		18		18	30	1
	고령군		46	1	45	60	5
	성주군		69	3	66	80	13
	봉화군		1		1	9	1
	울진군		13	2	11	10	0
	울릉군		1	1	0	9	0
기타 지역	포항시		0		-	-	-
	구미시		3	3	-	-	-
	경산시		10	10	-	-	-
	칠곡군		6	6	-	-	-
	예천군		1	1	-	-	-
	계	680	581	42	539	781	148

주: 경북도청 보도자료(2025.10.23.),

| 표 5-7 | 영덕군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발급자 현황

구분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2025	2026	합계	2025	2026	합계
국적	네팔	1	1	2	4	3	7
	루마니아	1		1			
	미얀마				2		2
	방글라데시	1		1			
	베트남	1		1	6	2	8
	우즈베키스탄	1		1			
	인도네시아				1	1	2
	중국		1	1			
	키르기스스탄				1		1
성별	남	3	1	4	13	6	19
	여	2	1	3	1	-	1
업종	기타 서비스업	1		1			
	농업				4	1	5
	어업				5	3	8
	제조업(곡물)					2	2
	제조업(광물)				1		1
	제조업(수산)	1		1	4		4
	음식업	3	2	5			
	합계	5	2	7	14	6	20

주1) '26년 5월 기준, 추천서 발급자 중 정상근무자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영덕군 내부자료('26.5. 기준)

- 지역특화비자 전환 대상자와 동반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주거 지원, 취업 연계, 문화 교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착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영덕군은 유입된 외국인 주민의 현장 적응과 소통 장벽 해소를 위해 대상자 역량 강화 교육(자체 예산 5.85백만 원)을 추진하여 한국어 사전평가를 거친 기초 과정 11명,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에 해당하는 중급 과정 9명을 수강 완료시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다짐

- 아울러 대상자의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취업상담(10명), 취업 설명회(4회, 129명 참여) 등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259개소 사업장에 우편물 안내 및 다각적인 SNS 홍보(7회)를 병행하여 민간 시장과의 일자리 매칭을 유기적으로 지원하였음
- 외국인 주민의 초기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 변경 허가자 19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층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수행하였으며, '24년 3명 '25년에는 25명을 대상으로 전수 대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립의 기초 데이터를 다짐
- 또한 초기 정착의 가장 큰 가로막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10명 규모의 정착 주거비 지원(도비 별도 예산) 계획을 수립·집행 중이며, 동반가족 역량 강화 교육(15명, 한국어 습득 및 지역 문화 투어)과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무료 통번역 서비스(15회)를 제공
- 이 외에도 광역(센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유학생 초청 지역 문화 탐방(39명, 2회) 및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의류, 난방유, 이불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견인하고 있음

표 5-8 | 희망이음사업 추진 성과(영덕군 기준)

구분	사업내용	실적	비고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근로자 대상 전수 실태조사 수행을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 수립	• '24년 3명 • '25년 25명/292명¹⁾	대면조사/심층면접 (0.3백만원)
대상자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지원	• 기초: 11명(사전평가) • 중급: 9명(사통 4단계)	5.85백만원
외국인 및 배우자 취업 연계 (설명회)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근로자/배우자 취업 연계 지원 (적성검사, 상담, 설명회)	• 취업상담/정보제공: 10명 • 설명회: 4회/129명 • 우편물: 2회/259개소 • SNS 홍보: 7회	0.41백만원
외국인주민 사례관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대상자 및 동반가족과 정기적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지원	• 비자 변경 허가자 사례관리: 19명	

구분	사업내용	실적	비고
정착 주거비 지원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대상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비 지원	• 10명(계획)	도비 (별도예산)
동반가족 역량 강화 교육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의 한국어 습득 지원 및 지역 문화 투어	• 15명/1회	2백만원
외국인 주민 통번역 서비스	지역특화형발급 대상자 및 동반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무료 통번역 서비스 15회	센터(광역) 연계사업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공동체 지원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간 멘토링을 통해 상호지원 및 경험 공유 기회 제공	• 유학생 초청 지역 문화 탐방: 39명/2회	2.09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방한용품 지원	지역특화형비자 변경 허가 근로자 대상 방한물품 지원(옷, 난방유, 이불)	• 16명	
지역특화형비자 추천인원	• 지역우수인재(F-2-R) - '24년: 추천 3, 정상근무 1/'25년: 추천 5, 정상근무 4 • 숙련기능인력(E-7-4-R) - '25년: 추천 17, 정상근무 14		
동반가족 초청 등 인구유입	6명(배우자 3, 자녀 한국에서 출생 3)		

주1) 외국인 대상 실태조사 전체 대비 지역특화형비자 실태조사 실적을 의미

주: 영덕군 내부자료

□ 행·재정적 실행 기반

○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지역법상의 특례와 연계하여 경북이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북 차원에서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도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경북도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조례 제1조)
-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에 외국인 차별방지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및 상담, 전문외국인력 처우 개선, 보육·교육사업(외국인주민), 한국어·직업교육, 가족상담, 의료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되어 지역특화비자와 연계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전담

센터로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3년 단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경북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자에 대한 정주 정책 개발, 외국인 유치, 일자리 연계, 시·군 가족센터 역량 교육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됨

- 아울러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여 위탁 사무의 행정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음

【표 5-9】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의 범위)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위원장), 제11조(회의),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3장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15조(자문회의의 설치), 제16조(자문회의의 기능), 제17조(회의),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	제19조(시책사업 추진), 제20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3조(세계인의 날), 제24조(포상), 제25조(명예도민), 제26조(시행규칙)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확인일: 2026.6.5.)

○ 영덕군 차원에서는 광역 단위 제도적 기반과 연계하여 「영덕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조례 제1조에 따라 해당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덕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 수산업 등 특화산업군에 필요한 맞춤형 외국인 비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매칭하는 기반으로 작용
-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

- 생활·법률·취업 등 전방위적 상담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임
- 이러한 조항은 영덕군이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음

| 표 5-10 | 영덕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4조(영덕군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의 범위)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 제10조(회의), 제11조(실비변상)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5조(포상),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17조(명예군민), 제18조(시행규칙)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확인일: 2026.6.5.)

- 영덕군을 기준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15백만 원 (도비 30%, 군비 70%)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영덕군 차원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 형태로 영덕군 가족센터에 '25년 약 50백만 원, '26년 65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교부하여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해당 보조금 예산에는 세부 프로그램 운영비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 관리 전담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고질적인 행정 인력 공백 문제를 민간 전문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인건비 보장(행·재정적 인센티브)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한국어 교육·사례관리 등의 연속성을 단단히 뒷받침하고 있음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영덕군 간의 행정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경북도의 위탁을 받은 광역 거점 기관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현장 집행 기관인 ‘영덕군가족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위탁을 받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영덕군가족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표 5-11】 희망이음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경상북도	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 사업비 지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 경상북도 지역특화형비자 연계사업 위탁(전담기관) •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총괄 및 분석 • 외국인 주민 취업 박람회(취업연계) • 워크넷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
영덕군(시군)	• 지역특화형비자 연계사업 사업비 부담 및 사업수행 지원 • 사업실적 등 현황 관리
영덕군 가족센터	영덕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주: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광역 차원에서 위탁기관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정주생태계 조성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유학, 취업, 비자, 주거, 보육, 교육, 인권 등 외국인의 생애주기별 필수 사회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 주민으로의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
- 비자 관련 교육 시행, 실태조사 및 사례 발굴을 통한 정책 개발, 시스템 및 회원 관리, 홍보 및 박람회 개최 등 거시적 제도 운영을 총괄
 - 대상자의 정주지원 및 관련 정책 개발, 외국인 유치, 체류자격 변경 지원, 일자리·기업 취업 연계,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수행
 - 외국인도 행복한 경북살이 입문교육(체류자격, 한국직장문화, 소방안전, 재무설계 등 의무교육), K드림 워크넷, K드림헬퍼 채널(8개국 다국어 제공), K-GKS 내비게이션, E-7-4R TOPIK 2급 취득 지원, 경북 글로벌학당 G-Pass Academy 등을 담당

- 나아가, 시·군 희망이음사업 전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전략, 법률 위기 실무대응, 노동환경 실태와 인권 쟁점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무소통 등의 교육·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영덕군 가족센터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및 광역 시책과 연계하여 영덕군 희망이음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주민 안전 정보 홍보, 정서지원 상담 및 컨설팅, 주거환경 개선(클린하우스 만들기), 노무사 자문 등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음
 - 영덕군 시군가족센터의 지역특화형비자 연계 사업 담당 인력은 3인이며, 이 중 1명이 해당 사업 운영 전반을 전담하고 있음
 - 전담인력을 통해 광역과 지역 내 산업체와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사례관리 및 사회통합 커뮤니티 구축 사업을 전문성 있고 연속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영덕군 내 수산업 분야 등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여 외국인의 원활한 비자 전환을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 주도의 사회통합 커뮤니티 구축 및 문화지원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음

| 그림 5-1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경북) 및 가족센터(영덕군) 홈페이지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 영덕군에서는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하여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업 및 근로자 매칭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24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영덕군 내에 지역특화형비자사업 기업

설명회 및 관련 제도교육을 위하여 3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찾아가는 기업설명회를 개최

- 이외에 2026년 5월에는 ‘강구수협’과 협약을 맺고 수산업 분야(선주·선원) 중심의 비자 전환 홍보 및 맞춤형 한국어 강사 파견 교육 협력을 확대

【표 5-12】 영덕군 지역특화비자 관련 현장 설명회 개최 현황(2024~2025)

구분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영덕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기업 설명회	'24.6.24.(월) 10:00~12:00	영덕로하스 수산식품 센터	영덕군, 울진군 외국인 구인 희망기업	-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의 이해 - 지역특화형 비자 기업 요건 - 지역특화비자 관련 질의/응답
지역특화형 체류자격 제도교육	'24.7.10.(화) 13:00~16:00	영덕군	지역특화비자 전환신청 희망자	- 영덕군 구인희망기업 현장방문 및 1:1 현장 면접 진행 - 지역특화비자 체류자격 및 경북도 지원사항 안내
지역특화형 체류자격 제도교육	'24.8.21.(수) 10:30~16:00	영덕군, 울진군	지역특화비자 전환신청 희망자, 구인 희망기업	-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자격 안내 - 구인희망기업 현장 방문 등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25.4.9.(수) 10:00~11:00	영덕군 강구수협	영덕군 소재 기업 등	- 지역특화형비자 관련 안내 - 체류자격 제도 교육 등

출처: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여 정리

□ 법·제도적 적용 환경

- 본 사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특례가 기반이 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동력은 광역과 기초 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의 유기적인 연계에서 비롯됨
 - 법·제도적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광역 단위의 정책 기획이 기초 단위의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공백 없이 전달될 수 있었고,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정주인구화의 명확한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
-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나타난 법·제도적인 개선 수요도 확인되고 있음
 - 지역 현장에서 숙련기능인력(E-7-4-R) 등 비자 전환을 위한 소득 수준이

인구감소지역인 농어촌·어촌의 영세한 사업장 현황이나 선박 운영 현실에 비해 여전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보육, 의료, 교육 등 필수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수요가 나타남

표 5-13 | 영덕군 산불 구조 외국인 선원의 거주 비자 특례 및 정착 사례

- '26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야간에 영덕군 마을까지 덮쳤고, 당시 주민 60여 명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어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
- 영덕군 관내에서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3인(수기안토, 레오, 비키)은 강풍과 불길 속에서 마을 전역을 돌며 주민 대피를 유도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마을 어르신들을 일일이 등에 업고 방파제로 긴급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 '26년 4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들 외국인 선원들을 격려하고 비자 연장 등 지원 방안 마련을 당국에 주문하였고, 법무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부 차원의 표창장 수여하고 기존의 제한적 체류 비자인 고용허가제 어선원(E-9-4) 자격을 안정적인 장기 정착이 가능한 '특별기여 자격 거주(F-2)' 비자로 변경하는 특례를 부여
- 해당 사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취약한 재난 위기 속에서 헌신한 외국인 인력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비자 특례 적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관내에 장기 정착시키는 계기를 창출한 사례임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5.4.18.). 연합뉴스(2025.4.1.)

제3절

경남 남해군

1. 사례 개요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남해군은 현재 5개의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교통 분야 2건(공유지 우선 매각, 세컨드홈 세제 특례), 문화관광 분야 1건(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지원), 기타 분야 2건(노후·유희시설 활용범위 확대, 건폐율·용적률 완화)으로 총 5개 특례를 활용 중
- 남해군은 공유지 우선 매각, 노후·유희시설 범위 확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3건의 특례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적 집행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반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지원과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별도의 자치법규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법률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세제 혜택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남해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요소 중 하나인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로 공유지 수도권 공유지 우선 매각과 노후·유희시설 범위 확대에 관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함

| 표 5-14 | 인구감소지역 특례 집행을 위한 조례 개정 현황(남해군)

분야	공유지 우선 매각	노후·유희시설 범위 확대	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명	거주 목적 수도권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가능	노후·유희시설 활성화 촉진을 위한 활용범위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2조, 제13조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4조
연계 조례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의7
개정 일자	2026. 2. 20.	2026. 2. 20.	2026. 2. 20.

주: 특례 활용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2. 특례의 현장 활용 내실성 분석

1) 수도권 이주자에 대한 공유지 우선 매각 특례 활용 사례

□ 지역수요 부합성

- 인구감소지역은 빈집이나 유휴 토지가 많아 이주자가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되지만, 현실에서는 집을 지을 땅이 없고, 살 집이 없는 주거 장벽에 가로막혀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민간 주택시장 규모가 작아 신규 주택 공급이나 택지 개발이 활발하지 않아 이주 수요에 비해 정주 공간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남해군은 이러한 주거 공급 부족 문제를 인구 유입과 정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이주자의 초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특히 공유재산 우선 매각 및 대부 특례는 민간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이주 희망자의 주거용 토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수요와의 부합성이 높음
 - 이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유입을 확대하려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례의 대상은 수도권에서 남해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이며, 특히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귀촌·은퇴 정착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 남해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은퇴세대, 귀촌 희망자, 생활인구의 정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나, 실제 정착 과정에서는 주거 공간 확보가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한 주거용 부지 공급은 잠재적 이주 수요를 실제 전입과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해당 특례는 지역의 핵심 인구문제인 정주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잠재적 이주 수요를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높은 특례로 평가할 수 있음

□ 행·재정적 실행 기반

- 남해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공유재산 우선 매각·대부 특례를 실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6년 2월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이를 통해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및 대부로 감경 규정을 구체화하여 특례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구축함
 - 특히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개 경쟁입찰 원칙으로 인해 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 특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제도화하였음
- 남해군은 특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함
 - 군수가 공유지 우선 매각 또는 대부를 추진할 경우 매각·대부 대상지, 신청자 자격, 거주 의무기간, 계약 해제 조건 등을 포함한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함
 - 또한 대상 공유재산 지정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례 활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매각 및 대부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지명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여 특례 취지와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집행체계를 마련함
- 해당 특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장치도 함께 구축함
 - 매각의 경우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 설정을 의무화하였으며, 대부 역시 거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를 통해 특례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실제 정착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음

- 재정적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이주자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수도권 이주자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감면 절차는 기존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설계하여 실무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함
 - 특히 사용료 및 대부료를 최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 부지 확보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착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표 5-15 | 거주목적 수도권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매각 관련 조례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공유지 우선 매각 (제15조)	•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 수립 • 수익계약 및 지명 경쟁 기준 • 거주 의무 특약 등기 설정	• 계획 수립: 대상지 지정, 매수자 기준, 거주 의무 기간 명시 • 행정 심의: 매각지 지정 시 ‘공유재산심의회’ 필수 심의 • 계약 방식: 수도권 이주자 대상 수익계약 우선 (경합 시 지명경쟁) • 사후 관리: 거주 의무 미이행 시 계약 해제용 ‘특약등기’ 필수 의무화
공유지 우선 대부 (제16조)	• 공유지 우선 대부 계획 수립 • 수익계약 및 계약 해지 기준	• 계획 수립: 대상지 지정, 대부자 기준, 거주 의무 기간 명시 • 계약 방식: 수도권 이주자 대상 수익계약 우선 (경합 시 지명경쟁) • 사후 관리: 거주 의무 미이행 시 대부계약 해지 조항 계약서 명시 의무화
사용료·대부료 감면 (제17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 물품 대부료 감경 및 절차	• 감경 범위: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대부료, 물품 대부료 전반 • 감경 한도: 최대 100분의 100 (전액 감면 가능) • 집행 절차: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준용
소급 적용 (부칙 제2~3조)	• 공유지 매각 및 감면에 관한 • 시간적 적용 범위 규정	• 소급 기준일: ’23년 6월 20일 이후 수도권에서 이주한자 • 적용 대상: 위 기준일 이후 이전한 자가 조례 시행 후 공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출처: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5조(공유지 우선 매각의 절차와 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남해군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제16조(공유지 우선 대부의 절차와 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유지의 우선 대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대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부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대부받는 자의 기준
3. 대부받는 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대부의 방법 및 절차
5. 대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남해군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로 감경 및 물품의 대부로 감경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100분의 100
2. 공유재산의 대부로: 100분의 100
3. 물품의 대부로: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로 및 물품의 대부로 감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20.]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 남해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실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구대응 총괄부서와 재산관리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구청년정책단)를 중심으로 특례 활용 필요성 검토, 조례 개정 추진,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계획 수립 등 정책 기획의 중추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검토와 계약·재산관리 등에 대한 실무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인구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수요와 공유재산 관리 관점에서의 법적·행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협업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특례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와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심의·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인구청년정책단은 컨트롤타워로서 특례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 재무과가 공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행정절차 적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후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상 공유재산의 활용 적정성, 처분 필요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특례 활용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남해군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활용하여 노후 유휴시설 지정과 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특례 활용이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 특례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는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음
 - 남해군은 특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과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질의·협의를 추진
 - 특히 공유재산 특례와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 간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특례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진체계는 인구대응 총괄부서의 정책 기획 기능, 재산관리 부서의

전문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연계하여 특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특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인구정책 부서와 공유재산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부서가 역할을 분담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특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전문개정 2021. 5. 17.]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전문개정 2021. 5. 17.]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건축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 팀장이 된다.

□ 법·제도적 적용 환경

- 남해군은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이주자에 대한 공유재산 우선 매각·대부와 사용료·대부로 감경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대상과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특히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법률상 사용료 감경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의계약 방식의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
- 남해군은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음
 -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자 자격, 거주 의무 기간, 계약 해제 요건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특약등기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특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다만 현행 특례는 수도권 이주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형평성과 정책 수용성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현장에서는 비수도권 전입자나 기존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남해군은 특례 활용 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통해 정책 필요성과 공공성을 검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노후·유휴시설 활용 범위 특례 활용 사례

□ 지역수요 부합성

- 인구감소지역은 신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보다 기존 공공시설과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이용 수요 감소로 기능이 축소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시설의 활용 범위 변경이나 복합적 활용이 쉽지 않아 지역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남해군 역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방치되거나 저활용 상태에 있는 공공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시설을 지역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남해군 통합안내상담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이주 희망자 상담의 80% 이상이 주거공간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정착 과정에서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초기 정착 자본이 부족한 청년·귀촌인·생활인구 유입층의 경우 기존 노후·유휴시설을 활용한 임대주택, 창업공간, 복합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 제2항은 지자체가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촉진을 위해 조례로 시설의 범위와 활용 범위,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이를 활용하여 노후·유휴시설을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26년 2월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시설과 유휴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활용 절차를 마련하였음
 - 또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연계하여 군수가 활용계획을 수립한 유휴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던 시설을 주거·창업·지역서비스 공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특히 이 특례는 신규 시설 건립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적 수요와 높은 부합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남해군은 현재 활용 가능성이 있는 노후·유휴시설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행·재정적 실행 기반

- 남해군은 노후·유휴시설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의 정의부터 관리·지정·활용 절차까지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 확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노후·유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남해군은 '26년 2월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노후시설', 1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시설을 '유휴시설'로 규정하는 등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음
 - 해당 시설에 대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집을 포함한 기존 법령상에 정의된 유사 개념을 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의하였음
- 또한 남해군 내의 노후·유휴시설의 체계적 발굴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정 절차를 마련하였음
 -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매년 노후·유휴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활용 가능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대상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선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또한 노후·유휴시설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음

- 조례 제13조는 노후·유헴시설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청년 창업공간, 업무공간, 문화·예술·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단일 목적 중심의 시설 운영 방식을 복합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연계하여 군수가 활용방안을 고시한 노후·유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개입찰 중심의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던 활용 제약을 완화
- 특히 남해군은 노후·유헴시설 활용이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기반도 함께 마련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법정 최저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초기 창업자나 귀촌·귀향인, 청년층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활용이 어려웠던 공공시설을 주거·창업·생활서비스 공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례의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노후시설”이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4. “유헴시설”이란 시설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1년 이상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운영이 중단된 후 1년 이상 재개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중략)..

제12조(노후·유헴시설 점검)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노후·유헴시설의 관리 상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실태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주소
2. 시설의 위치·규모·구조 및 건축연도
3. 시설의 현재 용도 및 실제 이용 현황
4.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 상태
5. 시설의 유헴 기간 및 사유
6. 그 밖에 활용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 확대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시설 및 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점검한 시설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2. 청년 창업공간, 공유사무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업무 시설
3. 전시관, 체험공간, 지역특산물 판매장, 소규모 숙박시설 등 문화·예술·관광시설
4. 그 밖에 인구 유입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 및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3(노후·유휴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 남해군은 인구청년정책단을 중심으로 노후·유휴시설의 발굴, 활용계획 수립, 특례 적용 여부 검토를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인구청년정책단은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정착, 청년 창업, 생활서비스 확충 등 인구감소 대응 관점에서 활용 방향을 총괄·기획
 - 재산 관리 부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검토와 계약 체결, 재산관리 등 집행 기능을 담당하며, 특례 활용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
- 남해군은 특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과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심의 체계를 운영
 - 인구청년정책단이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계획을 마련하면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가 노후·유휴시설 해당 여부와 활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하도록 설계
 - 이를 통해 특정 시설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활용 범위 확대,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
- 또한 노후·유휴시설 활용 과정에서 인구정책 부서와 재산관리 부서 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정책 목적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 인구청년정책단은 지역 수요와 인구정책 관점에서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산관리 부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계약 절차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
 - 이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을 함께 고려하는 협업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인구정책 부서와 재산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특례 활용의 객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법·제도적 적용 환경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노후·유휴시설의 범위와 활용 범위,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에 활용이 어려웠던 시설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유휴시설의 정의와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대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특례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
- 현장에서는 공유재산 규제는 일부 완화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계로 나타남
 - 노후·유휴시설 상당수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로, 당초 사업 목적 외 활용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남해군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는 공간을 주거·창업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법제처 및 관계 부처는 보조금 관리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공유재산 활용 범위 확대에도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은 순수 지방비 시설 또는 중앙부처 협의가 가능한 시설로 제한되는 점은 한계로 작용

제4절

요약 및 소결

1.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 활용의 중요성

□ 지역 상황과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특례의 현장 안착 특성

- 사례분석 결과, 특례가 지역 현장에 안착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례가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 본청과 영덕군은 인구감소와 단순노동 분야 단기체류 중심의 외국인 구조 등의 지역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역특화비자 특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었음
 - 남해군은 수도권 이주자의 주거 부지 확보 문제와 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증가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우선 매각·대부 특례와 노후·유휴시설 활용 특례를 적극 활용하였음
 - 인구정책 부서에서는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을 주거를 포함한 ‘공간’의 확보로 인식하였고, 이와 연계된 특례를 지역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

- 특례의 지역 현장 안착은 인구감소지역이 지닌 구조적인 한계점이나 지역의 수요 및 정책목표에 얼마나 적합하게 연계되는지가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 향후 특례 정책은 하향식으로 특례의 수를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나 핵심 현안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발굴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 역시 지역의 인구구조와 정주 여건,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는 특례 활용 전략이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현장 안착을 위한 지자체 추진체계와 실무자 역할

□ 특례의 지역 현장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운영 특성

- 사례분석 결과, 특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 내부 추진체계와 담당자의 이해도·전문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영덕군의 지역특화비자 연계 희망이음사업은 경북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영덕군, 영덕군 가족센터, 수산업체 등 사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남해군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특례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구정책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례를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특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도모
 - 나아가, 사례지역 모두 공통으로 인구감소 대응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조체계와 함께 실무 담당자의 이해도와 적극성이 특례의 현장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내 특례 활용 추진체계 정비와 실무자 역량 강화 필요

- 이는 특례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뿐 아니라 이를 관리·조정·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담당자의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인구감소 대응 주무부서는 특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부서와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특례가 개별 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례 활용 경험과 정보가 특정 담당자에게만 축적되지 않도록 전담인력 운영,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사례 공유 및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조직 차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 기존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여 특례

- 도입의 필요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부서 간 협의를 지원함으로써 특례 활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실무 담당자가 특례의 내용과 활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특례 관련 교육, 매뉴얼 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우수사례 확산과 제도개선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특례 활용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과 노하우

- 특례의 현장 활용 과정에서는 조례 정비, 법령 해석, 사업모델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시행착오가 수반되며, 이러한 경험이 특례 활용의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덕군은 지역특화비자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치·정착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 전담기관, 지역 기업 등과 협력모델을 구축하였음
 - 남해군은 공유재산 우선 매각·대부 특례와 노후·유희시설 활용 특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활용 기준 마련, 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관계 법령 검토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특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됨
 - 이처럼 선도 지자체가 축적한 정책 설계 과정과 운영 경험은 다른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에서 특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확산 및 제도개선 환류체계 구축 필요

- 특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하고, 현장의 경험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선도 지자체의 특례 활용 사례를 사업 추진 배경, 조례 및 제도 정비 과정, 추진체계, 성과 및 한계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함으로써 다른

- 지자체가 특례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례 활용 과정에서 마련된 조례, 운영지침, 협업체계, 거버넌스 운영 사례 등을 표준모델 형태로 제공할 경우 후발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특례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되는 법·제도적 애로사항과 사문화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남해군 사례에서 확인된 공유재산법과 보조금법 간의 제도적 충돌, 영덕군 사례에서 나타난 외국인 정착 및 인력양성 과정의 제도 운영상 애로 사항 등은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 6 장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기존 특례의 활용도 개선·보완

제3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신설

제4절 협력적 추진체계 정비

제5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현장 안착의 질적 성과 중심 특례 정책으로 전환

□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확대 중심의 정책 접근법으로 재구조화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상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정책 수단에 해당함
-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초기,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따라 특례의 양적 확대 자체가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기능
 - '23년 36건의 특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새로운 특례 발굴에 중요도를 두었고,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54번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역시 단순한 하드웨어 사업 등으로 정책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한계를 넘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상당수는 현재 활용이 되고 있었으나, 일부 특례의 경우 지자체 활용도가 미미한 특례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례가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법령 간 충돌, 행정 절차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특례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

- 이는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된 상황에서 단순히 특례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특례가 실제로 지역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활용과 성과 중심으로 특례 운영체계 전환

- 특례 정책의 초점을 특례 수에서 활용·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목표인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새롭게 정립함
 - 신규 특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례별 활용 실태와 정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함
- 활용도가 높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타 인구감소지역으로 홍보 및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인구활력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특례에 대해서 현장 활용 경험과 성과를 축적·공유하여 파급효과를 확산함
- 활용도가 낮거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함
 -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 충돌, 중앙부처 승인 절차, 과도한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특례의 실효성을 강화함

2.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도모

□ 현행 법·제도 조항의 제한요소를 완화하는 방향 강구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유출에 따른 절대적인 수요 부족, 청년층 유출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반 지역과 정책의 추진 여건이나 효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설·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하기보다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유재산을 목적에 맞게 경직되어 활용하는 것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
 -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이탈 방지뿐 아니라 새로운 인구가 지역에 전입해서 원활하게 정착하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는 인구 감소보다는 증가, 인구감소지역보다 비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인구감소지역의 현실과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공유재산 처분·활용, 유희시설 활용, 빈집 활용, 생활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
 - 특히 이용 수요가 감소한 공공시설이나 유희시설을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법령상의 규제와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
-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특례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분야에 집중되며, 담당자는 특례의 현장 안착 주요 장애요인으로 현장수요 불일치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
- 활용도가 높은 특례는 지역의 인구부족,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이나 외국인 인구를 유입,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비자, 세컨드홈, 규모의 한계로 유지가 어려운 뿔수의료 및 보육·교육 환경 개선 등임
- 이는 향후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발굴과 개선이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이 처한 현실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과 개별 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추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활용도 높은 특례 발굴·확대

- 인구감소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서비스 축소, 유흥시설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특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확대함
 - 인구 증가와 개발 중심의 정책수단보다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활서비스 유지,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함
 - 특히 유흥 공공시설, 빈집, 폐교 등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자원을 지역의 주거·창업·생활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높임
- 인구 증가와 개발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제도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
 - 공유재산법, 국고보조금법, 농지법 등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례 활용이 제한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제고함
 -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추어 특례가 도입되었음에도 상위법령과의 충돌, 과도한 행정절차, 중앙부처 승인 등의 제약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특례의 실효성을 강화함

3. 부처간 및 지자체 내부 정책소통과 협업체계 강화

□ 부처간 협업 및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특례의 실효성 증대

- 전체 조사 대상 지자체의 64%가 특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용 중인 특례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이는 지자체 내부의 활용 역량과

추진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 특례의 실제 활용 사례와 중요도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당수 담당자는 특례 활용 수준을 ‘기초 검토’ 또는 ‘활용 가능성 검토’ 단계로 인식하고 있어 특례가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활용 단계까지는 충분히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자체 내부의 특례 추진체계 역시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특례의 발굴·확산·연계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례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구감소 대응 주무부서의 특례 활용 수준과 추진체계 구축 정도가 사업부서보다 낮게 나타나 특례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할 컨트롤 타워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됨
- 더욱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특례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자 교체 시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특례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실무 담당자가 행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하여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례 적용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및 감사 대응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특례 활용보다는 기존 관행과 일반 법령에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특례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특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

□ 특례 활용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특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

-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 운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제도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례의 도입과 개선을 추진함
 - 소관 법령이 연계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함
 - 특례 도입 이후에도 현장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특례의 개선·보완으로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강화
-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개별 사업부서 중심의 산발적인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인구감소 대응 주무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
 - 인구감소 대응 주무부서가 특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부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특례 발굴, 적용, 성과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 기존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특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함
 - 특례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법적·행정적 위험요인을 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특례 적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통해 실무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 등을 최소화함
- 지자체 내 특례 관련 실무자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
 - 특례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 유휴자원 활용,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제고 등 성과를 창출한 경우 적극행정 평가, 창안제도, 포상체계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2절

기존 특례의 활용도 개선·보완

1. 인구감소대책 현행 특례 개선

□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현재 상당수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법적인 규정 실익이 낮은 경우가 발생
 -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인구 유출에 따른 절대적인 수요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특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
 -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에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특례가 존재하나, 출생아 수 또는 국공립 전환 수요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입법 실익이 낮을 수 있음
 -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제8항부터도 대학 유치 등 주로 대학과 관련되는 시책들이지만 현재 기존의 대학들마저도 통폐합 등 존폐의 기로에 있어 신규 유치는 공공의대 신설, 한전 부설 공대 신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는 세부사항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운영사례가 저조하거나 구속력이 부족해 실익이 낮은 경우도 있음
 - 인구감소법상 지원 및 보조의 내용이 그 자체가 포괄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서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특례가 존재함
 - 폐교 특례의 경우 교육감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폐교 시 자치단체장 의견 청취는 이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의견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익이 낮아질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나 교육청,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 예를 들어 인구감소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4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특별 교부금 교부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음

- 특히, 인구감소법상 특례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각 개별 부처의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되거나, 관련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특례의 독자적인 실효성이 저하된 사례도 있음
 - 인구감소법상 우대조항이 있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의료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개별법 등의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차별성과 효과성이 축소된 경우도 존재하며, 특례가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법령 간 충돌, 행정 절차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특례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

□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정하도록 한 특례의 지침 규정 마련

- 보육·교육 특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동떨어져 있거나, 실질적인 입법 실익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특례를 삭제할 필요는 없음
 -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도 읍 지역 이상은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도 있고 이 경우 국공립시설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존치 필요성이 있음
 - 개별법 등과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줄었더라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의지를 선언하고, 향후 일반법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 다만, 보육 특례(제21조 2항과 3항)의 경우에서처럼 교육부장관이 전환지침과 지원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가 지침 제정에 소홀한 경우 활용도가 낮기 때문일 수 있는바 보육·교육 시책이 필요한 지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부처의 지침을 정하도록 했지만 지침이 부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하도록 해야 함

□ 특례의 구속력이 필요한 경우 구속력 확보

- 세부사항을 특례로 규정하지만 그 특례가 추상적이거나 구속력이 부족한 경우 특히, 교육 등 중요한 시책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수정하는 안 고려

-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는 교육부장관의 재정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만 지원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 고려

【표 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원 강화(예시)

구분	내용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 제4항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수정 • 제5항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 돌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수정

□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 중인 주거 및 공유재산 특례에 대한 시행령 규정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인터뷰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거 공급 절벽에 의한 주택 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남해군에서 운영한 통합안내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남해군 이주 희망자 문의의 80%가 “주거공간 확보”에 집중
- 이주 초기 큰 자본이 없는 이주민들에게는 관리비만 야기하는 노후·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해 임대 주거 공간으로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인구정착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을 토로
 - 개별법령 중에서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주택지원 필요계층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배려만 있을 뿐이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는 법 및 시행규칙에 미규정되어 있음
 - 「농어촌정비법」 상에서도 민박업 규제(실거주 의무, 필지 분할 제한 등)나 빈집 소유주와의 지상권 계약 규제(제주도 외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등이 존재해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활용 정책 필요

- 이에 특히 수요가 많은 주거정책에 있어서 인구감소법 제24조1항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별도로 인구감소법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은 이 법에서 정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 고려
 - 이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지만 인구감소법의 하위법령 등은 국토교통부 등과의 필수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함
- 인구감소법 제24조2항과 관련되는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보수·철거 등 역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 확보와 관련된 관계법령상의 시책과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어촌정비법」 등과 연계한 시책 시행의 근거를 보완해줌

□ 조례로 범위와 요건을 정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보완

- 인구감소법 제24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남해군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계약방식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등 해당 특례를 실제 활용하고 있었음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범위와 요건 등을 정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거주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공유지 계약 방식, 우선 매각 및 우선대부,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 등은 남해군의 사례와 같이 조례로 위임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하거나 보수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하여는 지원 대상과 범위 및 요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2.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협의제도 완화

□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은 청년 유출, 고령화, 출산율 저하, 생활서비스 축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일반적인 복지정책만으로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청년 정착 지원, 출산·양육 지원, 고령자 돌봄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새로운 복지사업 도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정책수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함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는 단순한 협의가 아니고 합의 미도달 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농어촌유학의 경우에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신설 변경하려면 협의 조정이 필요함
-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복지시책을 경쟁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국가는 이를 조정통제할 필요성을 느껴 사회보장기본법에 임의적인 복지 신설 확대에 제동을 가하게 됨
 - 그러면서도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정략적 판단으로 복지시책을 확대할 때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조례로 도입하는 복지의 경우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초과조례의 문제로서 복지는 규제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다는 해석이 통설이었지만 지방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시책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인구감소대책의 경우 온갖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가 미미하고 그렇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어 인구감소대책으로서의 복지 시책 확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급여(복지급여)와 중복을 초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청년 정착 지원, 출산·양육 지원, 고령자 돌봄 지원 등은 중앙정부 사업만으로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와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협의제도 완화(안)

-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협의제도 완화(안)을 고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착·출산양육·고령자 돌봄 등 인구감소의 구조적 한계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로서 중앙정부 사업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지원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사회보장협의 제도가 단순한 규제·통제 수단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정책 실험과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지자체 담당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제33조에서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포상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포상·홍보,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을 이끌어 내는데는 미흡한 수준임
- 인구감소지역법의 특례조항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를 설득하며, 의회와 접촉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은 높은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써 상당한 위험부담을 수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보상은 건당 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 수준에 불과하여 공무원들은 조례 제정을 기피하게 됨

□ 인구감소지역 대책 수행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

-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재정법」상 예산 절감액에 따라 포상하는 ‘창안 상여금(제안제도)’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인구감소대책의 기획 및 추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포상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방치된 시설에 지속적으로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출하는 대신 민간에 위탁할 경우 최소한 운영비 절감효과는 거둘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시설 활용에 따른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어 상여금 지급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함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 활용 성과 우수 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산

□ 지자체 우수사례 확산의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됨
- 그러나 개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실제 활용하는 특례의 범위는 전체 특례 수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담당자들은 특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특례를 새롭게 도입·활용하려는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 사업모델 설계,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초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특례 활용을 확대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즉, 특례 자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도 확인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특례를 활용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특례를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점도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특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도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고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현장에서 행·재정적 작동 방식과 효과가 검증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자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특례 도입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특례 활용의 효율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3조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사례 역시 우수사례의 범주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행정안전부, 2025)
- '25년에는 전국에서 총 89개(광역 12개, 기초 77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13개(광역 3개, 기초 10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현장 발표 및 시상을 진행
 -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를 바탕으로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포상을 수여

| 그림 6-1 | 2025년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 개최



주: 뉴스원 <https://www.news1.kr/photos/7657737>

| 표 6-2 | 2025년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 발표사례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광역 (3)	강원	• 정주하지 않아도 지역과 연결되는 새로운 인구정책, 강원생활도민 제도로 여는 생활인구 시대!(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충북	• '임산부=국가유공자' 예우로 임산부 마음을 사로잡다!(인구위기대응 TF 인구위기 대응TF 및 도내 맘카페 순회 간담회 통한 임산부 지원 정책 발굴)
	경북	• 지역기반 이민정책(외국인 전담부서 신설, 유입-거주-정착지원 체계 조성)
기초 (10)	부산 서구	• 「메디허브 시티, 부산 서구」-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방소멸을 막다.(의료특화 서비스 제공, 웰니스 관광 활성화, 의료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
	광주 동구	•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AI헬스케어 기반 인구감소 대응 모델(AI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으로 창업지원 및 기업환경 조성, 신규일자리 창출)
	경기 가평군	• 청정 가평(청년 정착 가평) 프로젝트(청년층의 자립-성장-정착의 3단계 청년 정착 프로젝트 운영)
	강원 홍천군	• 홍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정책·제도개선, 기술개발 및 입주 인프라 조성, 기업 유치·육성 지원, 정주·생활환경 개선)
	충북 단양군	• 의료 공백 최소화해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든다, 단양군 보건의료원(단양군 보건의료원 건축 및 개원으로 지역 보건 및 의료환경 개선)
	충남 부여군	• 청년이 머물고, 관계로 이어지는 123사비 공예마을(지역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체류형 관광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전북 김제시	• 청년창업·정착지원, '쏟아있는 짬매프로젝트'(청년창업과 정착을 연결하는 김제형 로컬순환 모델, 단계별 창업 및 정착 프로세스 정립)
	전남 장성군	• 이윤 대신 상생, 로컬푸드 '장성한상' 농가레스토랑 운영(농가레스토랑 조성, 쿠킹 클래스 및 교육장 확장 등)
	경북 상주시	•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마을리더(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 특화사업 발굴,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추진 등 주민 주도 참여 통한 마을 활성화)
	경남 남해군	• 지방소멸에 맞서는 남해의 킥오프 : 클럽하우스로 정착을 이끈다(남해군 스포츠파크 인근 전용클럽하우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학폭예방 및 학습권 보장 조치 마련)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18.)

-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진대회의 평가 부문을 「특례 활용 부문」으로 확대, 구분하여 특례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
- 특례 활용 부문은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시·도별 자체 심사를 거쳐 접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 당해 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특례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하되, 타 경진대회 수상 사례는 제외하여 신규 사례 발굴을 유도

- 사례 접수 → 심사단 구성 및 사전심사 → 우수사업 선정 → 현장 발표 → 본평가 및 시상의 절차로 진행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를 확산하도록 함
- 분야별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평가를 진행하며, 특히 특례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과 구별되는 평가지표를 적용함
 - 수요 및 목적 부합성(30점), 담당자의 적극성 및 전문성(30점), 중요도 및 난이도(25점), 확산 가능성(15점)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특례 활용의 우수성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증
-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담당자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확산하여 특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함
 -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활용 경험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축적·공유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례 활용이 활성화되어 특례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

| 표 6-3 |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 및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안)

구분	내용
추진 시기	연 1회(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계)
부문 구성	• 정책/사업 부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현행) • 특례 활용 부문: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제도 개선 등 성과 창출 사례(추가)
참가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초지자체 및 관할 시·도 등
심사 절차	사례 접수 → 심사단 구성 및 사전심사 → 우수사업 선정 → 현장 발표 → 본평가 및 시상 → 우수사례집 발간
사례 접수	자체 심사(자율)를 통해 엄선된 사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당해 연도에 추진·시행 중·시행 완료된 사례 대상, 타 대회 수상 사례 불가)
심사지표(안) (특례 부문)	• 수요 및 목적 부합성(30):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부합하는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함 • 담당자의 적극성과 전문성(30): 특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였는가를 평가함 • 중요도와 난이도(25):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중요성, 특례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법령 충돌, 부처협의 등의 난이도를 평가 • 확산 가능성(15): 해당 특례의 활용 사례를 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함
결과 활용	시상, 우수사례집 제작, 교육자료 활용 등

제3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신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필요성

- 국가는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입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서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가보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경우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보조금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조치(제30조 및 제31조), 보조사업 배제조치(제31조의2) 등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임
 -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예외로서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을 허용하지만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실제 적용받기 어려움(제23조)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감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등 행정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당초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인구감소 방지라는 큰 틀 안에서 보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률의 규정이 엄격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활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에 대한 엄격한 용도 제한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희·자원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남해군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창업, 주거 등 다양한 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투입 시설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보조금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 인구감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롭게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

- 지역 내 노후·유휴시설 상당수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사업 목적 외 활용이나 처분을 위해서 소관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용 수요 감소로 인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창업·생활서비스 공간 등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남해군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는 공간을 청년 창업이나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중앙부처 승인 절차와 보조금 관리 원칙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특례 신설(안)

-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대다수 유허시설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또는 활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용도와 사용금지를 적용하되,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에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된 점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는 대신 협의를 하도록 절차를 완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노후·유허시설의 일부는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어 예산 절감에도 기여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보유한 유허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함

2.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허가 특례

□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은 각종 개발사업과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성과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관광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역 내 입지 하면서도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외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체감효과가 제한적임
 -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인구 유입이나 정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환경·경관 변화 등의 부담만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
- 정부는 ‘소멸위기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 54번으로 설정하여 소멸위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은 지역의 인구유입 선순환 구조 마련과 실질적인 활력 제고로 전환되고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정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선순환 경제 구축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는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 구축 등으로 방향이 전환
- 특히, 지역경제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및 햇빛 소득마을 등에 가점이 이루어지고, 지역 현장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하는 지역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그림 6-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방향 전환

기존(2026)	변경(2027)
• 대규모 기반시설(HW) 조성 • 일회성 투입·투자 • 단년도 투자계획 중심 평가 • 사업 발굴 및 집행 중심의 투자계획 • 1차(서면/현장답사), 2차(발표)	• 인구 활력 중심 프로그램 사업(SW) 확대 •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 구축 • 다년도 투자계획 및 인구성과 기반 평가 • 지역 문제해결 중심 투자계획 • 1차(서면/현장답0, 2차(질의응답, 필요시)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6)

- 이러한 가운데, 신안군은 `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
 - 정부도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같은 논리라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인허가권을 갖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주민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전환과 주민들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주민참여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출된 개발이익이 지역과 주민에 환원될 수 있는 인허가 특례가 필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0. 10. 20. 제27조의2 신설)〉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허가 특례 신설(안)

-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사업의 성과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인허가 특례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보유한 사업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방식과 이익공유 방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주민이 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모델을 허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주민참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참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수익을 참여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촉진함
 -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단순한 외부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청년층과 신규 전입자의 경제활동 기반 확대 및 지역 정착 유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유도함
 -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자의 참여 촉진과 주민-사업자 상생형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 내부에 축적되는 구조를 형성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제4절

협력적 추진체계 정비

1. 중앙부처간 정책소통 강화

□ 필요성

- 인구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은 다수의 중앙부처 소관의 여러 시책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고 이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운영과 재정지원 등도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상황에 정통한 실무 공무원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됨
 - 현행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서는 시군구와 시도에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장 상황과 실무자들의 판단을 전달 또는 공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회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초고위급 회의체로서 인구감소 대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뒷받침 아래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정책들이 공유되고 마련되는 통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산하 총괄 위원회 설치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중앙 단위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용하고, 시도나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대책은 여러 부처는 물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각급 조직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위원회 운용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음
-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와 차별성을 갖는 정책 조율 기구를 설치하고, 부처간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조율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해당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 부처 실무 국장급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을 고정시키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회의를 갖도록 하는 등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함
 - 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각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과 현황 파악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심의와 재정상황 등을 심의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2. 지자체 내 추진체계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 특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자체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

- 인식조사 결과, 특례 활용 수준은 인구정책 총괄부서보다 사업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례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역시 인구정책 주무부서에서 ‘분산 또는 미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특례 활용을 지원하고 부서 간 연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되나, 현재는 관련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정책 주무부서가 특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과 연계 가능한 특례를 발굴·안내하여야 하지만 추진체계가 부재할 경우에는 특례가 존재하더라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사업부서는 기존 개별법과 중앙부처 지침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특례를 자체적으로 발굴·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주무부서가

특례 정보를 관리하고 사업과 연계 가능한 특례를 발굴·안내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가 특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례는 기존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적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충분한 검토 절차와 내부 협의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특례 활용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 차원의 검토·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특례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조직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지자체의 순환보직 특성상 담당자 교체 시 특례에 대한 이해와 활용 경험이 축적·전승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전담 인력 또는 전담 조직을 통해 특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지자체 내 특례 활용 추진체계 정비는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음
 - 인구정책 주무부서가 특례 활용을 총괄·조정하고 기획부서 및 사업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특례의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담 조직, 협의체, 특례 검토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특례 활용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활용 촉진을 위한 실무 TF 운영

-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개별 부서 단위에서 산발적·단편적으로 활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 TF」를 구성·운영함
 - TF는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부서간 이견을 조정하며, 인구정책 주무부서를 간사부서로 지정함

- 협조/지원부서와 실행부서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특례 발굴부터 사업화,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함

| 표 6-4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특례 추진체계 정비안

구분	내용	비고
총괄책임자	• 특례 활용 방향 설정, 부서 간 협력 조정, 의사결정 • 주요 활용 과제 선정 및 추진상황 점검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협의 지원	부단체장
간사 (컨트롤타워)	• 부서 간 협업 조정 및 성과관리 • 특례 관련 법령·제도 정보 수집 및 관리 • 신규 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인구정책 주무 부서
협조/지원	• 특례 활용사업의 기금 및 국비사업 연계 지원 •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 확보 지원 •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법령 해석 및 절차 지원	기획예산/법무
실행부서	• 소관 분야별 활용 가능한 특례 발굴 • 특례 기반 사업 기획 및 실행 • 사업 성과 및 개선과제 발굴	사업부서 등

- 지자체 내부 특례 활용 TF는 특례의 발굴·공유, 검토·조정, 실행·연계, 성과·환류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
 - 먼저, 간사와 실행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연계한 특례 활용사업을 발굴·기획하면, 협조/지원부서를 중심으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법령 해석을 수행하고, 협조/지원부서의 예산 연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실행 되고 성과 및 환류되는 구조로 추진
- 나아가 특례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와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특례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간사를 중심으로 사업부서의 활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특례 활용 현황, 사업화 실적, 성과 및 제도개선 수요 등을 관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하는 환류체계를 마련

- 이를 통해 특례 활용 실적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함

| 표 6-5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특례 TF 운영 프로세스(안)

구분	참여 주체	주요 활동
특례 발굴 및 공유	• 간사(특례 정보 제공), • 실행부서(특례 발굴/초안 기획)	• 소관 분야별 특례 발굴 및 정보 수집 • 특례 기반 지역 맞춤형 단위 사업 기획
검토 및 조정	• 간사(안건 취합, 의견 조정 및 매칭) • 협조/지원(법령 해석, 행정절차 검토지원)	•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법령 해석 • 부서 간 협업 조정 및 복합 과제 조율
실행 및 연계	• 협조/지원(예산 연계 지원, 우선순위 조정) • 실행부서(특례 연계사업 실행)	• 기금 및 국비 사업 연계 방안 마련 • 특례 적용 사업의 현장 실행
성과 및 환류	• 총괄책임자(추진상황 점검, 협의 지원) • 간사(성과관리, 우수사례 관리)	• 주요 활동 과제 점검 및 의사결정 • 추진 성과 관리 및 제도 개선안 도출

□ 특례 활용에 관한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지자체의 특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부담에 대응하여 공식적인 검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 남해군 사례와 같이 특례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필요성과 공공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 아울러 위원회에 법률·재정·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특례 활용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능 확대도 검토
 - 법률, 재정,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례 활용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
 - 개별 특례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수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 해당 특례

- 특례 활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현장 수요와 특례의 불일치가 지목되고 있고, 지자체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특례 도입의 요구가 나타남
 - 활용도가 높은 특례는 지역특화비자, 세컨드홈 등 일반적인 지역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법·제도의 한계를 넘어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나아가, 특례의 현장 안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 중 ‘현장 수요와의 불일치’가 21.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사례분석에서도 지역의 주거·돌봄·인력 확보 등 핵심 현안과 직접 연계된 특례가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성과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실효성은 특례의 수를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 법·제도가 전제하는 성장·개발 중심의 정책 환경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례가 필요함
- 특히,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확보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신규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이는 구체적으로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②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특례임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해당 특례 신설(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는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인구감소지역법 제4장에 특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금법의 경우 보조금의 근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을 통한 특례를 신설하는 안을 고려
 - 현재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제4장에는 지방교부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특칙 역시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함
- 인허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특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처럼 개별법률에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서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 전반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함
 - 신재생에너지법의 문구를 참조하여 주민참여방식을 제시하되 인구감소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도록 함

표 6-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신규 특례 신설(안)

구분	개정안
제14조의 2 (국가의 보조금 지원상의 특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15조의2 (인허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법률상의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를 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인허가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해당 인허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가 포함된 사업(이하 “주민참여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는 주민참여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배분을 늘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문헌]

- 고용노동부. (2025).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 금창호·김정숙. (2019). 시군구 특례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도형·이소영. (2023).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동균. (2025).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성평등가족부. (2025).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
- 안소현 외. (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 양원탁·윤소연. (2024).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수동·전대욱. (2022).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기준 구체화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수. (20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한계와 향후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지방시대위원회. (2023).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 차미숙 외. (2023).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국토연구원.
- 행정안전부·교육부. (2025).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기본계획과 투자계획 설명회.

[뉴스기사 및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 6. 20.).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 8. 14.).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경북도청 보도자료. (2025. 10. 23.). 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인구감소지역에 새 활력 불어넣는다.
- 법무부 보도자료. (2025. 2. 20.). 법무부, 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2025. 4. 18.).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연합뉴스. (2025. 4. 1.). 서툰 한국어로 “할매” 외친 외국인 선원…산불속 60명 살렸다 (종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7. 18.).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 12. 18.).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법령 및 관련 규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1460호)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3호)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영덕군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웹사이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k-dreamcenter.co.kr/> (확인일: 2026. 6.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corrections.go.kr/> (확인일: 2026. 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확인일: 2026. 6.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확인일: 2026. 5. 1.)

영덕군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yd.familynet.or.kr/> (확인일: 2026. 6. 5.)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장 안착 조사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지자체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조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마련된 특례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특례개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완화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해 도입
 - ※ '23년 36개 특례 최초 도입 후, 지속해서 확대되어 '26년 60개로 확대
- (조사목적)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활용도와 현장 안착 수준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함
- (대상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시·도
 - 인구감소지역(89개)과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시·군·구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11개 시·도
- (조사대상) 인구감소지역 대응 업무 또는 기획부서 담당자
- (조사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2026년 5월 8일(금)

□ 조사 내용

- (활용현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준비) 중인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황 조사(엑셀시트 작성)
- (인식조사)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활용 수준, 지역 발전에 도움 정도, 현장 적용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인식조사(한글 파일)

□ 참고 절차 (※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① 사도 담당자는 관할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구에 조사양식(한글, 엑셀) 배부
- ② 사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특례 활용 현황에 관한 엑셀시트 작성
 - ※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부서별 담당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③ 지자체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수행(9문항, 엑셀시트 작성 후 수행)
- ④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 결과를 관할 사·도에 제출하고, 사·도는 이를 취합하여 제출
 - ※ 제출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지자체 특례 활용 현황(엑셀시트) 작성 방법

※ 엑셀 시트는 총 2개(「1. 활용 특례」, 「2. 특례별 현황」)로 구성되며, 직접 기입하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 첫 번째 시트("1. 활용 특례")

- 지자체명(시도명, 시군구명) 기입
- 지역에서 활용 중이거나 추진 중인 특례 표기
 - ※ '특례활용 여부(v체크)' 하단에 해당하는 특례 체크(v)

○ 두 번째 시트("2. 특례별 현황")

- 특례 분야, 번호, 특례명은 첫 번째 시트 기입에 따라 자동 기입
- 활용 중인 특례에 대한 '① 행정 프로세스 구축 현황' 작성
 - 담당부서(실국), 담당부서(과), 담당자(성명)/연락처는 직접 기입
 - 전담인력 여부 선택(O(있음), X(없음))

○ 활용 중인 특례에 대한 '② 제도적 기반 마련 현황' 작성

- 조례 제정 여부 선택(① 해당 없음(조례 필요 없는 특례), ② 조례 제정 필요(미제정), ③ 조례 제정 준비 중, ④ 조례 제정 완료(운영 중))
- 지침 마련 여부 선택(① 해당 없음(지침 필요 없는 특례), ② 지침 미수립, ③ 지침 마련 중, ④ 지침 수립 완료(운영 중))
- 해당하는 조례명과 지침명은 직접 기입

○ 활용 중인 특례에 대한 '③ 연계사업 추진 현황' 작성

- '연계사업화 여부' 선택(① 해당없음(사업화 필요 없는 특례), ② 미추진, ③ 사업화 검토 및 준비 중, ④ 사업 시행 중, ⑤ 사업 완료)
- 특례 연계 사업이 검토, 추진 중이거나 완료, 중단된 경우, 사업명, 사업기간(0000~0000), 사업내용, 사업비를 직접 기입(사업비는 국비,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기타로 구분 작성)

인구감소지역 특례 현장 안착에 관한 인식조사지 [양식]

소속	(시·도) (시·군·구) (실국) (과)
소속부서	① 인구대응 관련 부서 ② 인구대응 부서가 아닌 기획부서 ③ 기타 ()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동의하신다면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모바일 쿠폰 지급 예정) (이름:), (핸드폰:) ※ 답례품 제공 후 개인정보 파기

1. 귀 지역의 특성은 다음 중 어떠한 유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시형 ② 농산어촌형 ③ 제조업형 ④ 관광형 ⑤ 복합/기타
2. 현재 귀 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전략 분야(1~2순위)는 무엇입니까?
- <보기>
- | | | | | | |
|-----------|-----------|----------|------------------------------|-----|--|
| ① 주택/주거안정 | ② 교통여건 개선 | ③ 보육/교육 | ④ 의료/보건 | 1순위 | |
| ⑤ 문화/체육 | ⑥ 관광/생활인구 | ⑦ 산업/일자리 | ⑧ 기타() | 2순위 | |
3. 인구감소지역 특례(세제 혜택 포함)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도모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 됨 ② 대체로 도움 됨 ③ 보통 수준 ④ 별로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 3-1. 특례가 귀 지역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원 확보/예산 부담 완화 ② 정주 인프라 확충 ③ 규제 완화(기존 등) 및 행정절차 간소화
- ④ 정책 추진 동력 및 자율성 확보(지자체장 권한 확대 등) ⑤ 기타()
4. 귀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에 대한 활용 수준은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도화	기존 특례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신규 특례 발굴을 병행하는 단계
② 실행/안착	실제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례를 적용하여 집행 중인 단계
③ 기반 구축	담당자 지정, 조례 제정, 시행 지침 마련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 기반 구축 단계
④ 기초 검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검토하거나 선별하는 단계
⑤ 미검토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4-1. ①~②번 응답 시) 실행 및 고도화 단계의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1~2개 들어주십시오.

5.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복성/차별성 부재	이미 개별법이나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개별법 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퇴색
② 현상 수요 불일치	특례 내용 자체가 지역 현안과 동떨어져 실질적인 위기 극복에 의미 없음
③ 실행 가능 마련 한계	특례 적용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조례/지침) 구축에 어려움
④ 과도한 적용 요건	현실과 동떨어진 엄격한 적용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 발동하기 어려움
⑤ 행정 절차 장벽	다 법령·지침상의 충돌이나 소관부처의 소극성으로 협의·승인에 한계
⑥ 기타 (직접 기입)	()

6. 귀 지역에서는 **현행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항목을 1개 선택해 주십시오.

① 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뿐 아니라 의회,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특례 협의체/위원회 운영
② 전담 팀(Tf) 운영	기획부서와 사업부서를 아우르는 특례 업무 추진 Tf가 운영되고 있음
③ 전담 인력 배치	담당 부서 내에 특례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④ 담당자 지정	특례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 전담 관리는 어려움
⑤ 분산/비지정	특례 담당 부서 없이 개별 사업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

7. 신규 특례에 대한 제안이나, 특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건의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신규 특례 제안(특례명을 간략히라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건의사항(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 2026-05

인구감소지역 적용 특례의 현장 안착 성과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저	자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행	일	2026년 7월 2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